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일 시 : 2012. 6. 26(화)오후 2시

장 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로고)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로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로고)한국미래정책연구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www.sswkorea.org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1. 프로그램 (식순)	1
2. 인사말	3
3. 축 사	
심 윤 중 前 총장 (성균관대학교/ 現)국민희망포럼 이사장)	5
임 성 택(그리스도대학교 총장)	6
4. 주제발표 : 이 준 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
5. 토론자:	
1)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39
2) 신 인 석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49
3) 김 광 기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 겸 경제연구소 부소장)	59
6. 본 연구회 관련 언론 기사	69

프로그램

1부.....사 회: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본 연구회 이사)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사말씀.....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4) 참석자 소개.....사회자
- 5) 축 사 :

심 윤 중 前 총장 (성균관대학교/ 現)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 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2부.....사 회: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 1) 주제발표 : 이 준 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2) 토론자

1)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2) 신 인 석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3) 김 광 기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 겸 경제연구소 부소장)

3) 참관자 질의/응답

4) 마무리 발언 : 이 준 영 교수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 중에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심윤중 現국민희망포럼 이사장님이시자 前성균관 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임성택 그리스도 대학교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고용, 일자리, 소득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등 많은 우리나라 복지의 시급한 현안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고민하며 정책 대안마련의 장을 가진 바 있습니다.

결국은 복지에 필요한 자원 마련이고 그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전달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복지. 그 복지는 경제와 아주 밀접하며 상호보완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속 경제 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는데다 2010년 G-20 의장국이 되어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세계금융위기여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달성하여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모두 넘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게 되어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부족, 고용불안, 청년실업문제와 가계부채 증가로 소득양극화, 경제구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이태백, 사오정,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캔거루족, 삼포시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각종 신종어가 생기며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 졌고 행복지수가 세계 151개국 중 63위, OECD 36개국 중 24위입니다.

그래서 최근 2~3년 전부터 국가 주요 어젠더로 '복지'가 되었으며 우선 성장을 해서 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하던 시대가 아니라, 성장과 복지(분배)가 같이 요구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정치권에서는 헌법 119조2항을 근거로 여. 야 양당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되어야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복지는 거시적인 경제 정책이고 경제민주화는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 프레임으로는 소득양극화의 격차를 줄이고 최고의 복지가 된 고용 즉 일자리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대화, 산업화를 거쳐 이제 겨우 정치민주화를 이루어 정착시키려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아직도 경제민주화는 생소하기만 한데 올 연말에 있을 대선 후보들은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럼 경제 민주화가 무엇일까요?

재벌개혁,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재벌과 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기를 하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질까요?

정치권에서, 경제학계에서 활발히 거론 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며 '복지'와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복지학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 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풀뿌리 시민단체로 꾸준히 활발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본 연구회에서는 모든 국가 정책이 국민, 서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논하여 대안 모색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실 이준영 교수님은 경제학학사로 졸업 후 사회정책학 석, 박사를 독일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자를 모시는 기준이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찾아보니 전국 주요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은 다 찾게 되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몇 분이 안 계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영 교수님은 우리나라 시민단체로서 지대한 역할과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실련에서 여러 분야를 맡아 시민단체를 활발히, 적극적 활동하신 경제학자이십니다. 경제학측면에서 토론을 맡아 주실 분으로 추천을 받아 모시게 된 신인석 교수님,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 겸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님 모두 이 토론회에 기여이 함께 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 이 토론회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복지가 확대되어 우리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행복 지수가 올라가기 위한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26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축 사

심 윤 종 前 총장

(성균관대학교/ 現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선진사회복지 연구회가 어느새 열 번째의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학자들의 모임인 학계의 공식학회도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참으로 칭찬과 격려를 받을만한 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화를 경제적 영역에도 도입하여 무엇보다도 부의 분배를 정의롭게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고 하겠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를 토대로 하여 이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사회복지의 부의 분배를 공평하게 하자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볼 때,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민주화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의 실현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제 민주화가 사회복지의 바탕이 된다고 할 때 성장의 문제보다는 분배의 문제로서 복지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구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이상과 현실(한계)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생각해보면 사회의 각 구성원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행복에 있고 인류공동체의 영원한 소망이 유토피아의 건설에 있다고 한다면 이를 위한 국가의 궁극적 목표는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의 산업 국가들은 정의로운 부의 분배를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복지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복지이념의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역동적인 발전 속에서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경제성장을 가히 놀 날만한 수준에서 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억압받았던 정치적 민주화도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에서 성취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처럼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난제를 순차적으로 실현하는 국가적 위업을 이루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대단히 컸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도, 그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문제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려야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선진사회복지 연구회가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라는 폭넓은 문제를 가지고 발표회를 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위해서는 물론 국가의 정책결정에도 일조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발표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우리경제의 비민주성을 체계적으로 다루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경제민주화의 한계성도 동시에 다루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알찬 결실을 맺기 바란다.

축 사

임 성 택 그리스도대학교 총장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복지’라는 말은 모든 국가정책과 사회운동의 KEY WORD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적 꿈도 꿀 수 없고, 그것을 위하지 않는 사회운동은 의미 없는 것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지가 모든 것에 감초처럼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 복지를 이루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선 듯 그러하다고 답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즈음이면 ‘무엇이 선진 복지인가?’하는 것에 대한 치열한 논쟁으로부터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묻는 사회적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식수인 것처럼, 복지 홍수를 만난 이 시대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복지가 너무 아쉬운 것도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복지지상주의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 틈새를 소위 ‘복지표플리즘주의자’들이 빈곤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를 활용함으로 그들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시켜 왔던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의 주장을 실현시킬 재원은 국가재정, 곧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세金の 용도에 대한 초보적 이해의 결여에 기인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세金에 기초한 국민복지가 가져오는 비극적 결말을 유럽에서 보고 있습니다.

경제양극화의 해소는 세金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한 가진 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하한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편중된 경제적 잉여분이 전 사회에 골고루 미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결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진 복지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저항 없이 기꺼이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에 그들이 동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주최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는 매우 시기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에서 복지의 이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진정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복지는 어느 특정한 구성원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제시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주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신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님과 그리고 함께 도우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성의 있게 준비하신 원고와 발표에 대하여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 오늘의 토론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대의 ‘선진사회복지’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제 발 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왜 경제민주화인가?

최근 각 정당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 정권의 출범 당시부터 표방해 온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리고 시장경제우선 정책 등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올해에는 총선과 대선에 맞추어 각 정당들마다 복지의 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공약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을 기초로 보면, 한편으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목표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를 추구하기 이전에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경제민주화가 사회복지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절차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용어 그 자체로만 이해하면 생산, 소비 그리고 분배라는 경제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이 생산수단(자본)의 소유관계(경제권력)에 의해서만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국민들(대중)에게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최초의 논의는 1897년 웹(Webb)부부의 산업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28년 독일의 나프탈리(Naphtali, F.)에 의해 그 개념이 좀 더 체계화되었다. 그 후 이념적 노선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적용범위와 구체적 실행방안에 관해서도 다양한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다.¹⁾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관한 공통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념과 시각에 따라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 현실에서 적용하는데 혼란이 있다. 실제로 이념적 노선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방안들의 차이가 있는 만큼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입장의 차이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기초로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 파악하려 하였다.

II. 경제민주화의 본질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목적이나 목표를 중심으로 정의할 수 있고 수단 중심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강조할 것인지는 경제민주화의 적용범위나 실행방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사회복지가 경제민주화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신용옥(2007). “민주화 20년의 경제민주화 그 굴곡과 해체”, 「민주화 20년을 넘어서」, p. 113.

1. 경제문제로서의 사회복지

사회복지란 용어의 개념정의 방식은 크게 보면 사회복지를 행위로 정의하느냐 또는 상황으로 정의하느냐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사회복지란 인간이 생존, 성장 그리고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욕구를 가질 수 있는데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제3자가 그들의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란 그러한 개입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는 상황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사회복지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원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발적 그리고 강제적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를 위한 소득이전 방법으로 자발적인 기부 및 자선과 강제적 재원조달 방식인 조세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회복지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개인이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능력부족이나 나태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구조나 환경에도 원인이 있다.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빈곤의 대물림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부양이나 공동체에 의한 자선 및 자조 등의 형태로 자원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임금노동을 통한 생계수단의 획득이 지배적인 자원 확보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각 개인은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임금 형태로 소득을 분배받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취약계층이 미리 정해졌다는 전통적 인식이 약화되고 그 대신에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의 불안정과 사회적 위험들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란 개인적 이유이든 사회적 이유이든 한 인간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충분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게 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사회복지란 시장에서의 1차적인 분배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국가에 의한 2차적 분배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한다. 사회복지를 위한 소득의 재분배는 자본의 축적과 가계의 소비 및 시장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성장을 거쳐 다시 소득의 분배에 영향을 주는 동태적 순환과정 속에 있다.

2. 경제민주화의 이상적 지향점 및 목표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목적 중심으로 파악하려 하면 두 가지 이념적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첫째는 경제민주화의 이상적 지향점들이 다르고,²⁾ 둘째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목표들이 다르다.

2) 장상환(2004). “경제민주화의 현주소”, 「기억과 전망」, 겨울호, pp. 187-193.

1) 경제민주화의 이상적 지향점

고전적 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지배는 개인과 기업에게 속한 것이며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수단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 그리하여 그들은 자본주의적 사회질서가 말 그대로 경제민주화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경제민주화의 이상적 지향점을 정부주도의 경제에서 민간주도의 경제로의 이행 즉, 경제 자유화로의 이행과 시장기능의 강화에 두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를 국가의 ‘비민주적’ 또는 관료적 개입으로부터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유주의자들이 가정하는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에 대한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주체들에게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조화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불평등 문제나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경제민주화를 민주적 소유구조나 통제를 보장하지 않는 이른바 ‘대중(popular)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⁴⁾ 대중자본주의의 대처(Thatcher, M.)식 실험에서 나타났듯이 지분(share)의 분산(wide spreading)으로 소유구조나 경제권력의 집중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적 통제와 연결되지도 않는데, 중요한 경제적 결정이 여전히 경영자나 전문관료에 의해서 이윤창출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대적인 소유관계가 비용을 외부화 하고 일반의 복지를 사적 이익에 종속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정책에서 민주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를 거부한다고도 비판받는다. 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상품의 가치에만 투표할 뿐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는지 또는 누가 이윤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소득분배의 결과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

사회주의적 입장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사유재산의 불평등 분배에 기인하는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라고 본다.⁶⁾ 이것은 국가가 조세와 복지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를 하거나,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은 맑스주의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들은 가장 핵심적인 경제문제를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모순, 즉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추상적 가치는 중요하지만 이런 도덕적 가치는 경제체제의 변혁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경제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독점 자체나 독점 기업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주의적 입장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이상적 지향점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의 불균등한 분배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나 심지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는 그 자체로써 경제적 권력관계를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생산의 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는 경제권력의 한 요소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경제민주화의 개념정의에서 대중의 참여는 국가기구에 의해 대표되는 간접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한계가 있다. 결국

3) 영어판 Wikipedia.

4) Fotopoulos, T.(2005). *The Multidimensional Crisis and Inclusive Democracy*. Athens, pp.

5) 영어판 Wikipedia.

6) Fotopoulos, T.(2005). *The Multidimensional Crisis and Inclusive Democracy*. Athens, pp.

시장경제에서 민간부문을 통제하는 자본주의적 엘리트의 경제권력이 중앙계획경제에서 국가부문을 통제하는 정당(정치) 엘리트의 경제권력으로 대체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19조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민주화를 사회복지적 이상과 동등한 차원에서 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⁷⁾ 헌법의 규정과는 달리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통해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이라고 판결하여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경제민주화가 사회복지를 위한 수단 또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목적 중심의 개념정의는 이념적 노선에 따라 경제의 민주화가 우선인지 또는 경제자유화가 우선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심각하다. 그러나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⁸⁾ 또한 현대의 경제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가되어 각 개인의 빈곤 문제도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빈곤층 문제는 성장 제일주의의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형평을 위한 최소한의 적극적 정책이며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다.⁹⁾ 더 나아가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데 이들 계층 내의 생산자들의 건강과 의욕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들의 자녀들이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접함으로써 민주적인 시민정신과 양질의 노동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¹⁰⁾

2) 경제민주화의 목표

경제적 권력의 집중과 남용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개념의 이념적 차이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행목표와 관련 되는데, 그것은 사유재산의 폐지와 같은 소유에 대한 통제인지 아니면 경제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통제인지에 관한 것이다. 생산수단의 소유가 자본가에게만 있고 그것으로부터 경제권력이 발생되어 그들이 생산, 소비 그리고 분배 등의 중요한 경제적 문제의 결정에 있어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일반 대중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다. 또는 좀 더 온건한 이념적 성향에서는 사유재산제도는 부정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통제보다는 주로 자본가들에게 집

7) 이병천(2011).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그리고 보편복지-헌법 119조,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사회연구소 칼럼, 2011.7.19일자 프레스안. <http://www.peoplepower21.org/808635>

8) 장상환(2001). “경제 민주화와 삶의 질” 『세계정치경제』, 제8호, p. 2.

9) 정운찬(1990). “경제민주화 잘 돼가고 있는가?”, 『계간 사상』, 가을, pp. 32-62.

10) 미르달(Myrdal, G.)은 사회구조가 순환적 인간관계를 갖는다고 이해하고 절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정(+)의 누적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함. G. Myrdal(1977). “what is development” 『경제논집』, 서울대 경제연구소, 제16권 제2호, 1977.2. 정운찬(1990)에서 재인용.

중된 권력의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이른바 행위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1928년 프릿츠 나프탈리(Naphtali, F.)가 독일노조연맹(ADGB)의 지원을 받아 저술한 「경제 민주화의 본질, 방법 및 목적」이라는 책¹¹⁾에서 명명하였다. 나프탈리는 독일 사민당 내의 수정주의자인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나프탈리는 경제민주주의를 경제적 독재(Wirtschaftliche Autokratie)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의 새로운 경제질서로 규정하고 경제민주주의를 경제 민주화(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를 통해 사회주의로 이르는 길로 보았다.¹²⁾ 나프탈리의 경제민주주의 개념은 주로 경제적 지배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주로 유럽 대륙국가들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¹³⁾

독일을 비롯한 유럽대륙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참여를 경제적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앵글로색슨권에서의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적 소유구조의 민주화 즉, 자본소유에의 참여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풀(Poole, 1992)은 소유를 기준으로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구분하였다.¹⁴⁾ 풀에 따르면 산업민주주의는 노동자나 노동자 대표기구가 자신들이 고용되어 있는 곳에서 노동자 내부의 권위의 소재 및 분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산업민주주의는 소유에 대한 참가와는 관계가 없다. 이와 반대로 경제민주주의란 소유에의 참여, 특히 경제적 소유구조의 민주화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업소유 및 소유분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¹⁵⁾

3. 경제민주화의 수단으로서 참여

경제민주화의 본질에 대한 목적중심 개념정의에 비해 수단 중심의 개념정의는 비교적 합의가 용이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으로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컨셉들로 표현되지만 경제적 과정에 노동자의 공동의사결정과 참여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총괄적 조정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¹⁶⁾

메이슨(Mason)과 달(Dahl, R. A.)은 경제민주주의를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와 연결시켜보려고 하였다. 메이슨은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일터(workplace)가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⁷⁾ 그리하여 기업경영의 위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업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달(Dahl)은 민주주의의 목표는 정치적 평등, 민주적 과정, 정치적 기본권(자유)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공정성, 경제적 효율성, 덕성과 지성의 증진, 경제적 자유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달은 시장경제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으로 부과되는 법규와 조정체계 내에서 자율적인 기업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11) Naphtali, F.(1928). *Wirtschaftsdemokratie. Ihre Wesen, Weg und Ziel*. Berlin.

12) Naphtali, F.(1928).

13) 이승협(2004). “노동자 경영참여,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권력, 통제”, 한국사회학회 2004년전기대회 발표문.

14) Poole(1992) p. 429. 이승협(2004)에서 재인용.

15) Poole(1989) p. 2.

16) 독일어판 위키피디아(Wikipedia).

17) 정원규(2009). “공화주의적 경제 민주주의 전망”, 「사회와 철학」, 제17호.

경제체제를 경제민주주의로 이해하였다. 그는 각각의 기업종사자에게 한 표씩을 부여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자주관리기업의 개념을 제시하였다.¹⁸⁾

메이슨과 달의 입장은 경제민주화를 정치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 또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정치민주화가 중요한데 각 개인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율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경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시드니 웹(Webb, S.)은 자신의 저서에서¹⁹⁾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장래의 역할로서 산업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한 노동조합은 종래의 지방적, 직능적 조직으로부터 산업별로 전국적 집권적인 조직형태를 통해 노동자의 민주적 조직으로서 산업 경영에서 고용조건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통하여 사용자의 전제를 배제하고 노동조합의 참가를 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제도는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의 민주제와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민주제를 거쳐 산업민주제로 발전되고, 이러한 산업민주제는 트러스트에 의한 거대한 산업형태이든 공공관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결하다는 것이다.²⁰⁾

독일노조연맹은 1928년 함부르크(Hamburg) 강령에서 경제민주화를 요구하였고 그와 함께 자본소유에 기초한 지배력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치기구들을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기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²¹⁾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1920년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었고 독일노조연맹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었다. 경제민주화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단결권, 노동자보호권, 사회보험의 자치운영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공동의사결정권, 노동자대표의 경제정책기구 참여, 노조의 협조 하에 카르텔(독과점)에 대한 통제, 산업의 자치운영조직화(Zusammenfassungen von Industrien zu Selbstverwaltungs- körperschaften), 공기업,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한 농업부문의 생산성향상, 그리고 노조운영기업 발전, 소비자중심사회의 촉진, 교육독점의 해소를 위한 전문학교 등을 포함한다.²²⁾

프리트 빌마(Fritz Vilmar)도 경제민주화를 독재적이지 않고 민주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이해관계자와 민주적 국가의 참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모든 경제 구조 및 절차로 정의하였다.²³⁾ 빌러-엔치도 소유라는 기준보다는 노동자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 자본의 전제를 제한하고 공동영향권을 행사하는가를 중심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산업민주주의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소유 또는 지배구조를 통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배력의 남용을 통제할 것인지와 관련된 목표에 관한 합의는 없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개념정의들은 공통적으로 경제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관련자들의 공정한 참여를 핵심적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이

18) 정원규(2009). p. 334.

19) Webb, S.(1897). *Industrial Democracy*,

20) 장상환(2004). "경제 민주화의 현주소", 「지역과 전망」. 겨울호. pp. 186-206.

21) ADGB.(1928). Resolution des ADGB-Congress 1928 in Hamburg über die 'Verwirklichung der wirtschaftsdemokratie', in Schneider, M.(Hrsg.). *Kleine Geschichte der Gewerkschaften- Ihre Entwicklung in Deutschland von den Anfängen bis heute*. 1. Auflage. Dietz. Bonn. 1989. S. 436.

22) DGB.(1949). "Wirtschaftspolitische Grundsätz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vom Oktober 1949" in Schneider, M.(Hrsg.). *Kleine Geschichte der Gewerkschaften-Ihre Entwicklung in Deutschland von den Anfängen bis heute*. 1. Auflage. Dietz. Bonn. 1989. s. 459.

23) Wikipedia.

해하려 할 때 ‘참여’라는 절차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적다.

4. 경제민주화를 위한 참여의 내용

실제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소비 그리고 분배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중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경제민주주의 ‘참여’ 방식은 크게 소유에 대한 참여인지 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에서 경제민주화는 현행 경제의 비인간적인 문제, 생존의 보장, 노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그리고 타인에 의한 결정 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으로 보았다.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서 공동의사결정은 사업장 내에서 그리고 한 기업 내에서 그리고 사업장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1960년 금속노조(IG-Metall)의 대표인 오토 브레너(Brenner, O.)는 경제민주화를 미시적, 중간적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제안하였다.²⁴⁾ 첫째, 미시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노동과정의 참여적 구성을 목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작업장 차원의 참여를 의미하는데 개인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노동조직적인 문제들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작업장에서의 공동의사결정, 인간적인 노동환경, 과업확대에 관한 계약 및 협약, part-time에 관한 합의 등이 포함된다. 둘째, 중간적(meso)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경영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경영방침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를 목표로 한다. 거기에는 기업규칙의 민주화, 공동경제(Gemeinwirtschaft)의 설치, 협동조합 및 종사자기업(Belegschaftsunternehmen)의 촉진 그리고 최적 소득 및 임금분배를 위한 임금협상 및 규칙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공동의사결정은 제도화된 가장 의미 있는 방식이다. 기업의 공동의사결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1951년 석탄 및 철광산업에서와 같이 동수로 참여시키는 방식에서부터, 중립적 공동의사결정을 넘어 1/3을 대표하게 하는 방식까지 있었다. 셋째, 거시적(macro)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국민경제적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차원에는 국가차원 그리고 유럽차원의 경제 결정, 사회경제적 기본계획, 일자리 계획, 포괄적 조정, 사회적 및 경제적 조세 및 투자정책, 독과점금지법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 연방노동원(Bundesagentur für Arbeit)의 운영 등 사회보험의 자치운영 등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거시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참여는 대부분 국가의 정책 수립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치적 참여와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뮐러와 엔치는²⁵⁾ 경제민주주의를 전체 경제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본 산업민주주의의 한 영역으로 보고 산업민주주의를 다음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참여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작업장수준의 산업민주주의로 작업장 내 참여 또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한 작업장민주주의이며, 둘째는 산업부문수준에서는 단체협상제도를 통한 원래적 의미에서의 산업민주주의이며, 셋째는 산업 또는 전체 경제적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한 대표를 통한 참여의 경제민주주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관련하여 기업 및 사업장 수준의 참여와 지역사회 또는 국가수준의 참여라고 하는 2 가지로 구분한 연구²⁶⁾와 재벌 총수의 경영 전횡을 견제할 중

24) http://www.globallabour.info/de/2008/06/wirtschaftsdemokratie_zielbegr.html

25) Müller-Jentsch(1994). pp. 362-368; Müller-Jentsch(1997b), pp. 44-46쪽. 이승협(2004: 9)에서 재인용.

업원 경영참가를 전략적, 기능적 그리고 작업장 차원으로 구분한 연구 등이 있다.²⁷⁾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아래의 <표1>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기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민경제라고 하는 3 차원에서 생산수단의 소유권자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에 대응하여 각각 종업원대표, 노조 그리고 서민 및 중소기업들이 노사협의, 단체교섭 그리고 경제정책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1 > 경제민주화를 위한 참여의 내용과 차원

참여 적용차원	관련영역	소유 및 지배세력	참여주체	의제
거시적 차원 (macro)	국민경제 (경제정책)	재벌 금융자본 및 부 동산 소유자 경제관료	서민 중소기업	지배구조 이자율, 환율 조세 및 복지 공정거래질서
중간적 차원 (meso)	노동시장 (단체교섭)	사용자단체	노조	임금수준 노동조건 구조조정
미시적 차원 (micro)	기업·사업장 경영 (노사협의)	사용자	종업원대표	노동시간 작업배치

미시적 차원과 중간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이미 외국의 학자들과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해 참여의 주체와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표 1>에서와 같은 개념체계를 현실에 적용하려고 할 때 거시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재벌의 경영전략 또는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참여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기조나 이념적 노선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정책에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는 투표와 같은 정치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치적 민주화의 그것과 구분하기 어렵다.

III. 우리 경제에 어떤 비민주성이 있나?

경제에서 비민주성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기초한 지배력이 생산, 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을 독재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업경영 또는 사업장운영, 노동시장 그리고 국민경제 3가지 차원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에 기초한 지배력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6) 김차두(1993).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와 경제민주주의", 「상경연구」, 경성대학교, 제9집, pp. 35-41.

27) 장상환(2004). p. 202.

1. 기업경영 차원의 비민주성

생산, 소비 그리고 분배라는 주요 경제활동 중에서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제활동은 분배와 관련된 것이다. 소득의 분배는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시장의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수준이 결정되고 그 임금률에 따라서 노동자의 소득수준이 결정된다. 경제민주화의 문제는 임금의 결정과정에 노동공급자인 노동자의 욕구와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는 시장을 통한 자영소득이 얻게 되는데, 이때 시장에서 공정한 질서가 존재하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임금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해일 뿐 실제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다. 수요와 공급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 고전경제이론에서는 그와 같은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한 순간에도 노동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임금수준의 결정은 자본가나 경영자가 주도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노동의 공급이 많고 노동의 수요 즉, 자본의 공급이 적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측이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제비민주화로 인해 임금노동자의 소득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현재 한국에서 전략적 차원에서의 경영참가는 매우 낮은데, 기업의 경영전략 결정이나 장기계획의 수립 등이 아직 경영진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어, 노동자에게는 사후에 알리는 형태로 진행된다. 작업장의 경영 혁신과 관련된 작업장 차원의 경영참가도 복지 등과 관련된 기능적 차원의 경영참가 수준보다 낮다. 경영참가의 수준은 근로조건과 함께 전통적인 경영참가의 영역에 속하는 ‘복지’에서 가장 높고 정보공유, 작업 및 작업환경, 인적자원개발, 기업의 지배구조, 경영전략에 대한 참가 순이라고 확인된다.²⁸⁾ 결국, 임금 등과 같은 기업의 경영에 근로자의 참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1997)」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이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법 제2조에 노사협약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칙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노사협약의 거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특별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단체교섭에서와 다르다.

한편, 근로자경영참여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경우 비노조원, 특히 비정규직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주목할 점은 의사결정의 독점이 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의 소유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중심의 노조에서 기득권 소유에 기초한 지배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 단체교섭 및 노동시장 차원의 비민주성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정부주도 경제’에서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 즉, 경제자유화로 해석한다. 완전한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 곳에서는 이익과 불이익이 균등화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특권부여 등으로 인한 경쟁의 억제 또는 과도한 지원을 통해 과열 경쟁, 노동과 재화의 이동규제 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자본, 재벌 및 외국자본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소유와

28) 장상환(2004). p. 201.

경영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자본가는 소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다수 민중들 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²⁹⁾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등의 노동유연화 전략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신자유주의적 임금유연화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을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임금소득격차를 확대하여왔다. 이와 동시에 노동의 강도 또한 강화되고 있다. 정리해고에 관해서도 경영상의 긴박성, 해고회피의무,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그리고 성실한 협의 등 4원칙을 두고 있으나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강제력과 구속력이 부재하다. 결과적으로 IMF 사태이후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국민경제 차원의 비민주성

여기서의 문제는 소유의 집중과 소유에 기초한 지배력이 어떻게 서민의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소유가 집중된 형태인 재벌의 경우 직접적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비민주성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벌의 문제이다. 최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 증가하고 있는데 63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수는 총 1,831개(전년보다 288개 증가)로 2년 연속지정 집단(54개)의 계열회사가 117개 증가(42.2%)하였고, 신규지정(169개 증가) 및 지정제외(9개 감소)가 160개 증가하였다(57.8%). 평균계열회사 수는 29.1개로 전년의 28.3개 보다 0.8개로 약 2.8%증가했고, 계열회사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94개), 대성(85개), 씨제이(84개), 삼성(81개), 롯데(79개)순이다.³⁰⁾

<표 2> 연도별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수	48	53	55	63
계열사수	1,137	1,264	1,554	1,831
평균	23.7	23.8	28.3	29.1

출처: 공정거래위원회(2012) 보도자료.

53개 대기업집단 중 25개 기업집단이 98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동일인이 자연인인 22개 기업집단이 94개, 동일인이 법인인 3개 집단이 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14개 기업집단소속 49개 금융보험사가 114개 계열회사(금융 62개사, 비금융 52개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출자규모는 총 3조3,121억 원에 상당한다.³¹⁾

재벌의 문제는 집중된 경제력을 남용하여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재벌소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휴일 없이

29) 장상환(2004). p. 188.

30) 공정위원회 보도자료(2012).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63개 지정(2012.4)

31)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2010).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24시간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대형마트 종업원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50시간을 초과하고 있어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소유의 집중에 관한 또 다른 문제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기업 및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서비스기관과 심지어는 교회 등 종교기관도 사적 개인에 의해 장악되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들을 민영화하게 되면 사적인 이익추구에 치중하게 되어 본래의 목적인 공익을 소홀히 하게 된다.

재정운용의 비민주성도 심각한데, 예산이 철저히 정부 주도로 편성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대개 시간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있어 의회에 의한 예산의 통제는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정부 재정은 긴급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GDP의 약 22.4%이지만 우리나라는 10% 미만이고 국민부담률은 사회보험을 포함해도 25.3%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하위그룹에 속한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지속적인 감세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40%에서 36%로 인하,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득세율을 1% 인하하였다. 결국 직접세의 비중이 낮아져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벌들이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거시경제운동을 살펴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당정협약과 정부와 재계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벌 자신의 이해관계 관철로 인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거시경제 운영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은 배제되었고, 노사정위원회는 형식적으로 3자 기구지만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³²⁾ 그 결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 사항에 합의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대외경제관계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및 한미 FTA 등과 같은 국제통상협상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통상전략상 불리를 이유로 통상협상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협상을 비준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지자체가 의결한 우리 농산물 급식 조례가 WTO협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국민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외국 자본에 의한 금융지배의 문제도 심각하다.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이 해외자본에 매각되었고 외국인의 국내은행에 대한 주식소유가 증가한 경우가 5개에 이른다. 그 결과 외국 자본의 금융기관경영 지배에 따라 서민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소비자 대출에 집중해 산업자금의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자본들의 중요한 투자처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1997년 IMF사태 이후 투자 제한이 철폐되어 외국인 보유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 시가총액 기준 42%에 이르렀고 그 후 외국자본의 비중은 42%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말에 32% 수준을 유지하였다.³³⁾

32) 장상환(2001). 7.

33) 장상환(2001). p. 20.

4. 경제의 비민주성과 국민 삶의 질

소유에 기초한 지배력이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저임금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한 각종 금융정책 및 조세정책은 서민에게 불리한 소득분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1) 고용 현황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0년 63.3%로 순위는 21위이며 OECD 평균은 64.6%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8%이고 OECD 평균은 8.5%이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낮은 편이나 고용률도 낮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수가 적은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문제로 지적된다.³⁴⁾

<표 3>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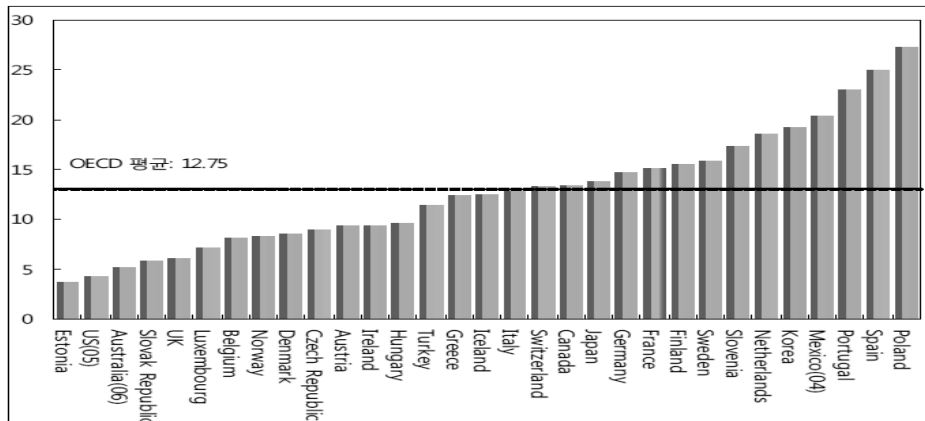
중분류	세부 지표	현 황	우리나라 순위	OECD 평균
고용률	고용률	63.3%	21위	64.6%
	남성 고용률	73.9%	15위	72.7%
	여성 고용률	52.6%	27위	56.7%
	청년층 고용률	23.0%	29위	39.5%
	중년층 고용률	73.8%	26위	75.3%
	장년층 고용률	60.9%	7위	54.0%
실업률 (낮은 순서)	실업률	3.8%	2위	8.5%
	청년층 실업률	9.8%	8위	16.7%
	장기실업자 비율	0.3%	1위	32.4%

출처: 기획재정부(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그림 1>을 보면, 우리나라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009년 전체고용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회원국가들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29%로 14위이며, OECD 평균인 2.14%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임시직 고용보호지수는 2.08%로 16위였으며 OECD 평균은 2.07%였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임시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 이들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34) 기획재정부(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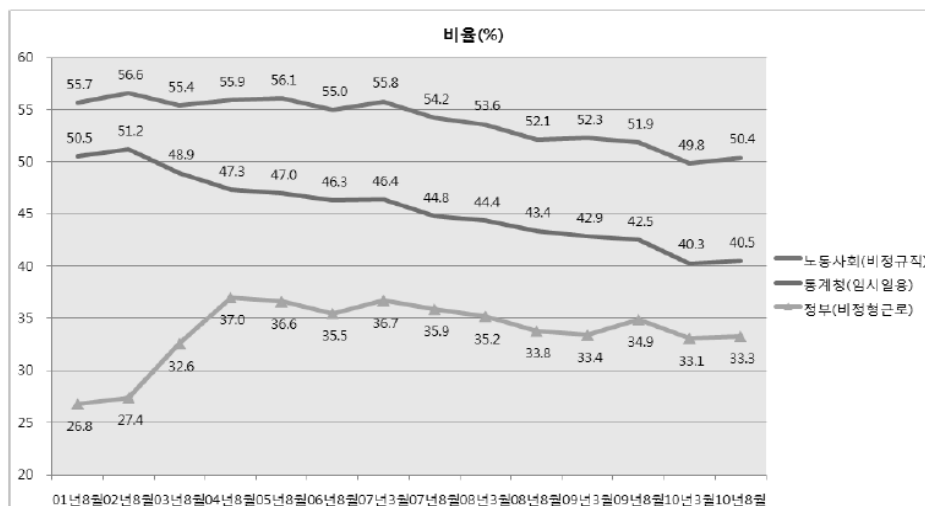
< 그림 1> 임시직 근로자 비중(2010년)



출처: 기획재정부 - 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7년 3월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다.³⁵⁾ 실제로 감소 된 것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기간제 보호법이 효과를 발휘하였고, 글로벌 금융 위기의 타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통계적 착시현상이며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현행 조사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용직 증가, 임시일용직 비율 감소는 2002년부터 지속된 현상이다.

< 그림 2 > 비정규직 비율



출처: 김유선(2011). “비정규직실태와 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부는 고용형태만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하여 임금근로자 중 고용형태 상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 노동자들만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을 따를 경우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에 해당하는 580만 9천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런 개념을 따를 경우

35) 김유선(2011). “비정규직실태와 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안정되고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분되는 비정규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통계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³⁶⁾ 즉, 고용형태와 함께 종사상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주장을 따를 경우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48.0%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된다.³⁷⁾

2) 임금수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6일 ‘국세청 통계로 살펴본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란 보고서에서³⁸⁾ 2010년 근로소득자 1518만 명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0.503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9년의 0.494보다 악화된 것이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통상 0.2~0.6의 값을 보이는데,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 정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상적인 가구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2010년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10이었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취약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가구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개인 간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하위 10%)은 5인 이하 사업장까지 포함했을 경우 5.23배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7곳 가운데 멕시코(5.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3.12달러로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4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³⁹⁾ 한국의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은 2000년 22.0%에서 2008년 32.0%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OECD 19개 회원국 중 16위로 여전히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최저임금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30.4%), 체코(30.0%) 그리고 미국(25.4%) 세 나라 뿐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10년 8월에 196만 명이며, 이들의 94.3%(185만 명)이 비정규직이고, 76.6%(150만 명)이 고졸 이하의 학력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67.6%(132만 명)으로 다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도 4.3%(8만 명)이었다.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1.1%(11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서민들의 금융이용실태

2011년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약 21조원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약 3조원의 순이익으로 전체 금융권이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예금 이자는 낮추고 대출 이자는 올리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했고 그 후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인하하지 않고 있다.⁴⁰⁾ 국민들의 금융이용현황을

36) 김유선(2011).

37) 김수현(2012).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및 특성, 고용실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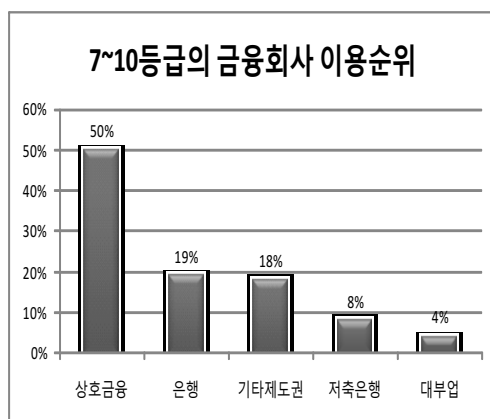
<http://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aper=20120531034130340&pcd=EA01>

38) 김유선(2012). “국세청통계로 본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9) <http://blog.daum.net/peoplepower21/15863664>

살펴보면 1~6등급 보유자는 은행 54%, 상호금융 30%, 저축은행 1%로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7~10등급의 저신용 서민층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상호금융 50%, 은행 19%, 저축은행 8%, 대부업 4% 등으로 이용순서가 나타났다(<그림 3> 참고).

<그림 3> 서민층 금융회사 이용 실태(2010.11)



서민층의 금리부담 현황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차주의 신용등급과 금융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저신용 서민층은 대부분 20%를 상회하는 금리를 부담한다. 특히,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중 다수는 7~10%에 이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 중이며, 이것이 과도한 고금리 유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표 4> 참고).

<표 4> 금리부담 현황

(단위 : %)

금융회사	주거대출고객의 신용등급* (신용대출 기준)	일반 신용대출 금리**
은행	1 ~ 3등급	5 ~ 14%
상호금융	2 ~ 6등급	10 ~ 25%
여전회사 (할부, 리스회사)	4 ~ 7등급	20 ~ 35%
저축은행	5 ~ 9등급	25 ~ 40%
대부업체	7 ~ 10등급	35 ~ 44%

출처: 금융위원회(2011).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2011.4.15)보도자료.

사금융 채무 보유자 1인당 이용액은 950만원, 이용업체는 2.1개, 금리는 연 204%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이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돈이 급한 사람들의 고금리 사채이용은 여전하고, 법상 상한금리(연66%이하)이하로 돈을 빌린 경우는 25%에 불과하다.⁴¹⁾

4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8/02000000000AKR20111028191800002.HTML>

41) 금융감독원(2007).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07.5.9.

개인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은 52.9%로 미국에 비해 20%정도 높고, 영국(35%), 대만(17%)보다 높아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⁴²⁾ 2010년 금융감독원 국문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10년 말에 151.4만 명에 달하고 있다. 2009년 말의 193.4만 명과 비교할 때 21.7% 감소한 것이다(< 표5 > 참고).

< 표 5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 (단위: 천명)

구 분	2003 년말	2004 년말	2005 년말	2006 년말	2007 년말	2008 년말	2009 년말	2010 년말
금융채무 불이행자	3,720	3,615	2,976	8,796	2,583	2,271	1,934	1,514

출처: 금융위원회(2011). 「예산사업평가 일반회계」.

4) 소득 및 재산의 불평등 정도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그 정도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빈곤 문제는 사회구조의 작용에 의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층 문제는 성장 제일주의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참고).⁴³⁾

< 표 6 > 빈곤율 추이 (2인 이상 전가구 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절대적빈곤율	6.9	6.9	7.9	7.7	7.7	7.8	8.1	7.1
상대적빈곤율	11.1	11.8	12.4	12.1	12.6	12.6	12.2	12.0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토지 및 주택소유의 불평등도 심각한데,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는 1,3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33만 명이 증가하여 총 인구(4,899만 명)중 27.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 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6.7%로 2005년(57.0%)보다 0.3%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097만 세대로 총 세대(1,833만 세대)중 59.8%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8.9%로 2005년(59.3%)보다 0.4%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⁴⁵⁾ 2010년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61.3%로 2005년에 비해 1.0% 증가하였고 타지 주택 보유 가구 비율이 15.5%로 2005년에 비해 4.2% 증가하였다. 타지 주택은 현재

4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25691

43) 정운찬(1990).

44) 국토해양통계누리(2006) 토지소유현황.

45) 통계청(2012). “인구가구구조와 주거특성변화 보도자료”.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외의 주택을 의미하며, 소유 유무는 가구주나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 임차로 거주하면서 타지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2005년 75만 가구(4.7%)에서 2010년 124만 가구(7.1%)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5~2010년 사이 다주택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다주택 가구 비율은 8.3%로 2005년에 비해 1.7% 증가하였다.

< 표7 > 가구의 거처 점유-타지 주택 소유 형태(2005~2010년)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5년		2010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다주택	1,047	(6.6)	1,443	(8.3)
1주택	7,781	(49.0)	7,946	(45.8)
임차거주 타지소유	747	(4.7)	1,239	(7.1)
무주택	6,312	(39.7)	6,711	(38.7)
전체	15,887	(100.0)	17,339	(100.0)

출처: 통계청(2012). “인구가구구조와 주거특성변화”, 보도자료

아래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 계수가 0.351로 상당히 높지만, 토지 및 주택소유의 편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대한 원인은 수요자측면에서는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 수요가 지배하고, 공급측면에서는 공공주택 중심이 아니라 민간 건설업자 주도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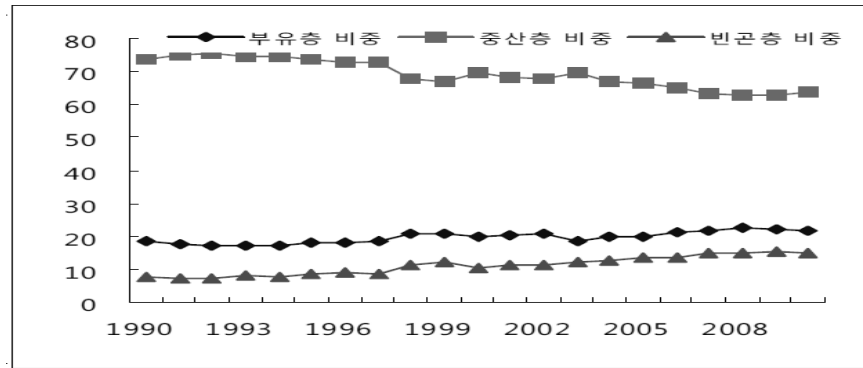
< 그림 4> 우리나라 토지, 주택, 소득의 분배의 형평성



출처: <http://blog.naver.com/icomputer?Redirect=Log&logNo=30080655641>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중산층 비율(중위소득의 50%~150%)이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빈곤층 비율(중위소득의 50%미만)이 증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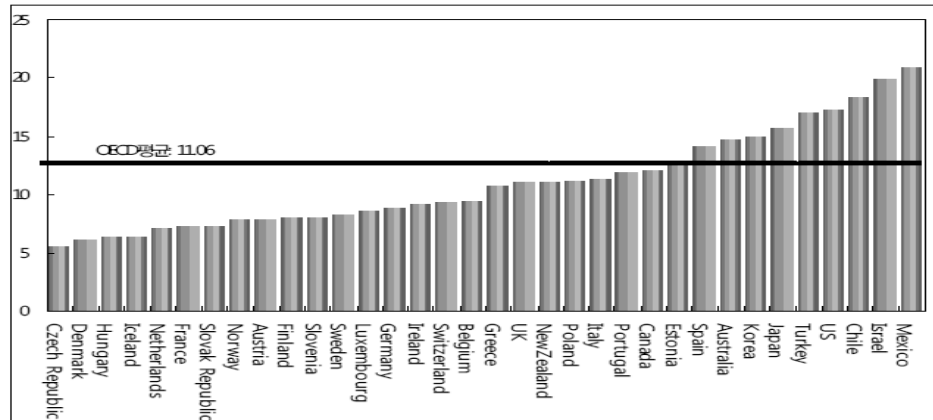
< 그림 5> 중산층 및 빈곤층 비중



※ 중산층은 중위소득 기준 50~150%, 빈곤층은 50% 미만의 소득 가구.
출처: 기획재정부(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이러한 모든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이라 생각된다. 2011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⁴⁶⁾ 우리나라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률이 15%로 34개 OECD회원국 중 28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그림 6> 참고).

< 그림 6 > OECD국가 상대적 빈곤율(2000년대 후반)



출처: 기획재정부(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IV. 사회복지를 위한 경제민주화는 가능한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란 국민 모두가 물질적인 만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소득이라는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재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형평을 위한 적극적 정책조치이자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

46) 기획재정부(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시킬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볼 수 있지만,⁴⁷⁾ 이와는 반대로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자유화와 시장기능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견해의 차이와 논란은 각 정당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3가지 차원에 입각하여 1차적 분배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각 정당들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목표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총선공약집, 통합민주당의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공약집’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기업경영의 민주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민주화하는 것, 즉, 노동자 스스로가 기업의 경영자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기업의 이윤을 나눠 가짐으로써 그들이 생산한 부의 분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⁴⁸⁾ 자본주의적 주식회사와 국가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소유 경영형태로서 경영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자주관리 또는 공동결정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민주적 참여 기업을 들 수 있다.⁴⁹⁾

노동자가 기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종업원지주제, 노동자들의 기업경영권 인수 등이 있다.⁵⁰⁾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업원의 자율적 참여 및 자기부담의 원칙 하에서 세제·금융지원 등의 간접적인 유도를 통해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⁵¹⁾

종업원의 경영 참가는 생산, 분배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개별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종 제도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⁵²⁾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법으로 1997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종업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종업원 대표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구조와 민주적 의사소통구조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종업원평의회 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작업장에서의 민주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금체계의 개편, 작업시간 변경, 채용배치, 해고 등 주요 인사사항, 고용조정계획, 신기술 도입 및 작업장 재조직 등의 문제들을 합의를 통한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⁵³⁾ 또한 종업원평의회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종업원이사과 종업원 감사를 추천·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⁵⁴⁾ 이러한 종업원의 경영참여는 종업원대표이사제⁵⁵⁾와 함께 노사관계의 안정은 물론 산업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사공존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들을 통해 효율적 생산과 정의로운 분배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각 정당별 경제민주화 공약을 살펴보면, 통합민주당의 경우는 기업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방

47) 정운찬(1990).

48) 장상환(2004).

49) 장상환(2001). p. 17.

50) 조영철(2002). “시장, 조직, 경제민주주의”, p. 324.

51) 양원택(1998). “우리나라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경제학논집」, 제7권3호, p. 274.

52) 황기돈(2001). 「근로자 경영참가의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교육원.

53) 장상환(2001). “경제 민주화와 삶의 질” 「세계정치경제」, 제8호, p. 19.

54) 양원택(1998). p. 285.

55) 유종일(2011). 「경제119」 시사HN북. pp.

안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 사회적 대화(노사민정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핵심정책으로 종업원 대표의 이사 추천권을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도 이사회나 감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참여 결정권을 확보하는 법안 제정으로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종업원지주제 그리고 유럽식 노사공동결정법 제정과 시행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⁵⁶⁾ 새누리당의 경우는 기업차원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별다른 정책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단체교섭 및 노동시장의 민주화

중간적 차원의 경제민주화는 본래 의미의 산업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차원에서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협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진다. 단체협상을 통한 교섭과정에 노조에 의해 대표되는 간접적인 참여가 있어 개별 노동자들은 임금을 적정 수준 보장받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며 정리해고제를 개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자신들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고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⁵⁷⁾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노조가입률은 약 8%대로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비정규직은 가입된 경우가 거의 없고 단체교섭의 결과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참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최근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가 있다.

각 정당별 경제민주화 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노동시장차원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임금복리 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대표신청시정제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줄이기, 사내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감소분 지원,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거나 주 10시간으로 축소, 중소기업 교대제 개선 시 지원금 확대 그리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촉진 등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통합민주당의 경우 노동시장 차원의 경제민주화의 정책과제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 노동조합 조직률 및 교섭력 강화, 노동자 생활안전망 구축 등을 설정하고 핵심정책으로 비정규직 해결 및 정리해고제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⁵⁸⁾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입법화하고 기업은 고용유연화에 대한 대가로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세액 공제, 공공부문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혁 그리고 간접고용의 사각지대 줄이기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리해고제도의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신설, 해고의 협의 절차를 신설, 대량해고에 관한 행정적 통제조항 마련, 해고를 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조치의 명문화 그리고 해고의 구체적 요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을 목표로 하였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시장차원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9.8%에서 20%로 단체협약 적용률을 10%에서 5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 남용 규제,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특수고용 및 돌봄노동의 노동자성 확보와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특별법 제정 그리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56) 통합진보당(2011).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해설집.

57) 유종일(2011).

58) 통합민주당(2011). “경제민주화 10대 핵심과제”.

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⁹⁾

각 정당별 기업경영 및 노동시장 차원의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8>과 같이 나타난다.

<표 8> 각 정당별 미시적(micro) 및 중간적(meso) 차원의 경제민주화

정당 차원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중간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해소 고용형태 공시제도 '사내 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대표신청시정제도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임금지원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중소기업교대제 개선 지원	동일가치노동에 동일 임금 입법화 간접고용에 의한 사각 지대 해소 비정규직 고용안정수당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제지원 정리해고규정의 개정 (긴박성 불인정, 해고 협의절차, 대량해고 통제, 피해고자 구제, 해고요건의 단체협약 등 신설)	노조조직률 제고 (9,8% -> 20%) 단체협약 적용률 (10% -> 50%)
미시 (기업경영)	특별한 대책 없음	종업원대표 이사추천제	이사회나 감사회 노동 의 참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 진에 관한 법률' 제정 종업원지주제 유립식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각 정당별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경제민주화의 본래적 의미와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고 종업원 대표의 이사 추천이나 종업원지주제 등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이미 「근로자경영참여법」에서 다양한 참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 법의 강제성과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간적 차원인 노동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는 노동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단체교섭을 통한 참여와 관련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생산수단의 소유에 기초한 지배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집단들 간의 참여의 기회 불균등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 내부자인 정규직의 의사결정 독점과 외부자인 비정규직의 배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단지 통합진보당에서만 노조의 조직률을 제고하거나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59) 통합진보당(2012). “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제시하고 있을 뿐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참여의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불균등한 협상력과 참여의 결과로 초래되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는 목표에 더 치중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의 공약으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임금지원이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 노동자의 편의를 위한 유연성과 생활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국민경제의 민주화

거시적 차원 즉, 국민경제의 경제민주화는 구조, 과정 및 결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업소유 집중, 지배력의 남용 그리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재벌의 소유 및 집중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둘째, 재벌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인지 그리고 셋째, 지배구조나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되는 서민경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1) 기업 소유 집중의 규제

재벌문제의 해결은 재벌총수 가족의 소유경영독점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 대안으로 국가적 소유, 다수 중소자본들의 연합소유, 기관투자가들의 소유, 다수 국민들의 소유 그리고 노동자들의 소유를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의 소유형태를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보았는데 주식 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연금기관, 해당 기업의 노동자, 다수 일반국민 등에 의해 소유되는 기업을 말한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기업이나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사 등은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적 주식지분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례이다.⁶⁰⁾

재벌기업의 공개와 공기업의 사유화를 위주로 하는 소유분산정책 대신 재벌기업에 대해 독점이윤세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고 재벌기업의 소유를 종업원 및 사회에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있다. 또는 업종 전문화 및 전문경영화 정책 대신 노동자의 경영진 통제 및 노동과정 참여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도 제안되었다.⁶¹⁾

재벌들의 독점과 문어발식 기업확장 등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자산 총액이 많은 순으로 30개 그룹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있다. 지난 1987년 처음으로 자산규모 4000억 원을 넘는 그룹을 지정하였다. 이후에는 자산 순으로 30개 그룹을 구분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해당되는 기업은 소속회사 간 상호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신규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 기한 내에 해소해야 한다. 금융, 보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2년 30대 기업집단 일괄지정제도는 폐지되었고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 등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각 정당별 경제민주화의 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 그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인상만이 공약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경우 기업의 소유집중의 규제를 위해 출자총액을 40%로 제한하는 제도를 부활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60) 장상환(2001). p. 17.

61) 장상환(2004). p. 192.

한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의 복원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 분리청구제 등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재검토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 이 밖에 회사의 지배구조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 공시 제도’의 도입도 공약하였다.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 등에서 재벌 관련 조항을 하나로 묶어 “재벌법”을 제정하고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 제한,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하여 계열사들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은행, 통신 그리고 정유 산업에 연기금 등 공적기관의 지분확대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과 철도, 산업은행, 인천공항,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민간위탁) 전면 중단 등을 목표로 포함하였다. 그 외에도 금산분리와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란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질서를 위한 각 정당별 경제민주화 정책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강화 등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한다.⁶²⁾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당한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법집행 강화,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규제 등이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담합, 납품단가 부당 인하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등을 3대 불공정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과세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정책에 기업범죄 처벌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규제 완화 등 대주주의 전횡방지 및 소액주주의 보호 강화 등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을 목표로 한다.

통합진보당은 공정거래질서와 관련하여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을 금지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네 슈퍼와 지역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하여 재벌 진입을 금지하려 한다.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슈퍼형 편의점, 가맹점 SSM,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 모두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일시 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 그리고 카드수수료를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1%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납품원가연동제 그리고 초과이윤의 일정액을 납품업체 노동자 인건비 및 교육비에 사용하도록 하는 초과이윤공유제 등도 제시하였다.

3) 서민경제 보호

경제민주화는 본래 기업의 지배구조 및 그 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적 공정성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한 경우 빈부의 격차가

62) 새누리당(2012). “진심을 품은 약속”, 2012년 총선 공약집.

발생하게 된다. 이때 국가가 개입하여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를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이전을 통해 소득을 직접 재분배하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경제민주화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 및 부동산 그리고 금융자산 등 서민가계와 직결된 거래에서 공정한 질서와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간접적인 정책으로 보았다.

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약자인 상가임대차인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경기의 과도한 변동을 막을 수 있고 저금리상황에서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2001년 12월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임대료의 인상을 규제하고, 안정적인 임대기간보장 그리고 공시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대보증금의 보호가 가능해 질 것이다. 계약의 갱신에서 임차보증금의 인상을 일정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매 또는 공매시에는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1년씩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 가능성을 인정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2007년 6월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자율을 연간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최고 이자율초과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지급부분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자제한법은 또한 시중의 여유자금이 고리사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약자인 사채이용자가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각 정당별 경제민주화 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빈부격차의 시정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단계적 인하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과악률 제고, 역외 탈세 및 체납추징 강화, 신종상거래 과세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중심의 미소금융채널 구축을 통한 저금리 지원, 햇살론 대환대출 보증지원 비율 확대와 공급규모 확대도 제시하였다.

통합민주당은 서민의 경제와 관련된 경제민주화를 위해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과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법인세 과표 및 세율을 200억원 초과 22%에서 500억 원 초과 25%로 조정하여 특혜성 감세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와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도 포함하였다.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중고차 실수요자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 카드수수료인하를 위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수수료 적정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월세 상한제, 대부업체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30%로 인하와 이에 대한 불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정임대료제도 및 계약갱신권 도입으로 전세값 상한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해 1억2천만 원 초과소득자에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소유 집중 제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서민경제 보호라는 3 가지 분야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 정당들의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9>과 같이 나타난다.

<표9> 각 정당별 거시적(macro) 차원의 경제민주화

정당 분야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기업소유 집중규제	1000억 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인상	<u>출자총액제한(40%)</u> <u>순환출자금지(부채비율 100%)</u> <u>금산분리(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복원, 계열분리청 구권)</u> <u>금융민영화 철회</u> <u>외국자본 은행지분 제한</u> <u>사회적 책임공시제도</u> (지배구조)	'재벌법'으로 통합 (<u>순환 출자금지, 출자 총액제한, 계열분리 명령제</u>) 은행, 통신, 정유 산업 공공성 강화 (연기금 지분확대, 민영화중단) <u>외국자본 은행 지분 제한</u>
공정거래 질서확립	<u>일감몰아주기 근절</u> (내부거래 조사 및 법집행) <u>부당단가인하에 대한</u> <u>징벌적 손해배상</u> 중대한 담합에 대한 <u>집단소송</u>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규제	<u>일감몰아주기제한</u>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u>징벌적 손해배상</u> 다중대표소송제 증권관련 <u>집단소송강화</u> <u>중소기업적합업종</u> <u>대형마트, SSM 영업시간</u> <u>제한 및 의무휴일</u> 금융정책, 감독정책 분리 골목상권보호 기업범죄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납품원가연동제 <u>중소상인고유업종</u> (동네수퍼와 지역상권) <u>SSM 영업시간 제한</u> 및 허가제, 모든 업종 카드수수료 동결(1%)
서민경제 보호	<u>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u> <u>인하(2천만 원)</u>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과약 역외탈세 방지 및 채납추징	최고세율적용구간 하향 조정(3억 -> 1억5천) 법인세과표 및 세율 인상 (2백억 22%-> 5백억 25%) <u>종합소득세 과세기준</u> <u>하향(4천만 -> 3천만)</u> 파생상품의 증권거래세 대주주 주식양도 차액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 상향 중고차 실수요자 마진세 카드수수료인하를 위한 세금공제 금융수수료 적정 심사 전월세상한제 이자율 제한(30%)	<u>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u> 공정임대료제 및 계약 갱신권 주민참여형 재개발 <u>소득세율 인상 (1억 2천만 원 이상 40%)</u> <u>종합부동산세 정상화</u>

거시적 차원의 경제민주화에서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관련하여 각 정당별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유사하다. 그러나 기업소유 집중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매우 미흡한데 비해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서로 일치하는 다수의 공약들이 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의 보호라는 분야에서 보면 각 정당들의 목표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다.

경제민주화의 수단적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와 관련하여 모든 정당들이 충분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경영차원 및 노동시장 차원의 참여는 주체와 방식이 이미 상당부분 제도화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거시적 차원의 참여에 관하여서는 참여의 주체와 방식이 상당히 모호하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미 투표와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권을 정부나 경제관료들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위임은 받은 정부나 관료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대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4. 경제민주화와 삶의 질

경제사회의 여러 구성원들 간 그리고 여러 부문들 간 상호 의존성이 크게 강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빈곤 문제는 사회구조의 작용에 의한 측면이 많으며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층 문제는 성장 제일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⁶³⁾ 경제민주화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벌기업의 횡포나 소득의 불균등 분배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삶의 질을 다양한 참여방식을 통해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경영 및 노동시장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로 노동을 상품화하여 생계의 수단을 얻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에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기업소유집중의 규제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에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부과를 통해 서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여러 차원에서의 비민주성이 국민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는 경제의 비민주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차원에서의 비민주성이 소득분배의 불균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자들에 대한 다년간의 매우 정밀하고 체계적인 통제 실험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의 비민주성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관한 정량적인 분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성적 추론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만이 가능할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론적으로 경제민주화

63) 정운찬(1990). “경제민주화 잘 돼가고 있는가?”, 「계간 사상」, 가을, p. 39.

의 본질은 소유 및 지배의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목적으로 균등한 참여기회 보장이라는 수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참여라는 절차를 통해 소유와 지배의 집중이 완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경제민주화의 지향점과 목표에 대한 해석이 이념적 노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자유주의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국가의 ‘비민주적’ 또는 관료적 개입으로부터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최대 다수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조화로운 결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불평등 문제나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부정하에서도 경제민주화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헌법 제119 폐단내용을 두고 1항의 경제자유가 우선인지 또는 2항의 경제민주화의 규정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정당들은 이념적 노선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지향점과 실행방안을 달리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실행목표가 소유에 대한 제한인지 지배력의 남용에 대한 규제인지를 둘러싸고 이념적 노선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실질적인 참여와 관련된 것인데 정치민주화를 경제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소유와 경영에 대한 일반대중의 ‘보편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정치민주화는 보통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재산소유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1표씩의 투표권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과연 경제 영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다. 달(Dahl, A.)이 제시한 것과 같은 이른바 자주관리기업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는 기업경영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일반대중이 직접적으로 소유나 경영과 같은 중요한 경제문제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특히,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를 상대로 각 개인들의 참여를 실현하려고 할 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노동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균등한’ 참여가 원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민주적 참여는 노동조합이나 소비자단체 또는 공익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유나 경영에 참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보호)운동, 시민단체운동 그리고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참여의 중요한 방식이다.⁶⁴⁾

사유재산의 소유에 대한 제한 또는 통제 그리고 경제적 권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법제정이나 정책수립에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에 대한 참여는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참여가 가능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참여는 작업장 수준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외하면 대부분 간접적인 참여의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의 주도 세력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다. 국가가 주도한다면 정치(정당) 엘리트가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이들이 과연 재벌의 지배력과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경제관료들과 재벌 간의 밀착된, 이른바 정경유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문제들이 야기되어 왔다.⁶⁵⁾

마지막으로, 이념에 대한 차이로 인해 경제민주화의 목표와 실행방안에 있어 합의가 용이하

64) 조원희(2000).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경제민주화운동 비판과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 통권 제47호, pp. 5-28.

65) 홍종학(2008).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기억과 전망」, 제19호, pp. 18.

지 않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수단의 소유 및 경영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중의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만이 최선의 길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인식하고 마이클 포터가 제안하는⁶⁶⁾ 이른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문화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된다면 기업과 사회가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금융감독원(2007).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07.5.9.
- 기획재정부(2011). 「국가경쟁력 보고서」.
- 김수현(2012).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및 특성, 고용실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김유선(2011). “비정규직실태와 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유선(2012). “국세청통계로 본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차두 (1993).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와 경제민주주의“, 「상경연구」, 경성대학교, 제9집, pp. 29~46.
- 변형윤 외 (1992). 「경제민주화의 길」. 비봉출판사.
- 신용옥(2007). "민주화 20년의 경제민주화 그 굴곡과 해체“, 「민주화 20년을 넘어서」, pp. 109-139.
- 양원택(1998). “우리나라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경제학논집」, 제7권3호, pp. 263-289.
- 유종일(2011). 「경제119」 시사IN북.
- 이병천(2011).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그리고 보편복지-헌법 119조,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사회연구소 칼럼, 2011.7.22일자.
- 이승협(2004). “노동자 경영참여,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권력, 통제”, 한국사회학회 2004년 전기대회 발표문.
- 장상환(2001). “경제 민주화와 삶의 질” 「세계정치경제」, 제8호. pp. 1-21.
- 장상환(2004). “경제 민주화의 현주소”, 「기억과 전망」. 겨울호. pp. 186-206.
- 정운찬(1990). “경제민주화 잘 돼가고 있는가?”, 「계간 사상」, 가을, pp. 32-62.
- 정원규(2009). “공화주의적 경제 민주주의 전망” 「사회와 철학」, 제17호. pp. 325-354.
- 조영철(2002). “시장, 조직, 경제민주주의”, p. 324.
- 조원희(2000).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경제민주화운동 비판과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 통권 제47호, pp. 5-28.
- 통계청(2012). “인구가구구조와 주거특성변화 보도자료”.
- 홍종학(2008).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기억과 전망」, 제19호, pp. 4-35.
- 황기돈(2001). 「근로자 경영참가의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교육원.

66) Porter, M.(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2011. Vol. 1-2. pp. 62-77.

- ADGB(1928). "Resolution des ADGB-Congress 1928 in Hamburg über die 'Verwirklichung der wirtschaftsdemokratie'", in Schneider, M.(Hrsg.). *Kleine Geschichte der Gewerkschaften- Ihre Entwicklung in Deutschland von den Anfängen bis heute*. I. Auflage. Dietz. Bonn. 1989. S. 436-437.
- DGB(1949). "Wirtschaftspolitische Grundsätze des Deutschen Gewerkschaftsbundes vom Oktober 1949. In: Schneider, M.(Hrsg.). *Kleine Geschichte der Gewerkschaften - Ihre Entwicklung in Deutschland von den Anfängen bis heute*". I. Auflage. Dietz. Bonn. 1989. S. 457-462.
- Fotopoulos, T.(2005). The Multidimensional Crisis and Inclusive Democracy. Athens. <http://www.inclusivedemocracy.org/journal/ss/ss.htm>
- Myrdal, G.(1977). "what is development" 「경제논집」, 서울대 경제연구소, 제16권 제2호, 1977.2.
- Korsch, Karl (1972): Arbeitsrecht für Betriebsräte. Köln/ Ffm.
- Naphtali, Fritz (1977). *Wirtschaftsdemokratie: ihr Wesen, Weg und Ziel, Verlagsges. d. Allgem. Dt. Gewerkschaftsbundes*. Berlin 1928, Neuauflage Europäische Verlagsanstalt Frankfurt, 1966
- Poole, Michael (1986a): *Towards a New Industrial Democracy: Workers' Participation in Industry*, London/NewYork.
- Poole, Michael(1986b): *Industrial Relations: Origins and Patterns of National Diversity*, London/NewYork.
- Poole, Michael (1989): *The Origins of Economic Democracy: Profit-sharing and employee-shareholding schemes*, London/NewYork.
- Porter, M.(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2011.vol 1-2. pp. 62-77.
- Poole, Michael (1992): "Industrial Democracy". In: Széll, György (Hg.): *Concise Encyclopedia of Participation and Co-Management*. Berlin, S. 429-439.
- Webb, S.(1987). *Industrial Democracy*.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경제민주화는 일차적으로 생산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이차적으로는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참여했으나 충분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에 대해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한 국경제가 조속히 실현해야 할 국정과제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지칭되는 헌법 119조 ②항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최근 학자는 헌법 119조 ②항과 ①항이 상충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상호 보완적인 내용들이다. 미국에서도 1900년 대 초반에, 1890년 이후 입법된 anti-trust law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 소송이 있었으나, 시장에 참여하는 각 경제 주체들의 “거래의 자유”가 “계약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경제민주화 법률들이 합헌으로 합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 고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헌법 전문 일부

우리 대한국민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이론적, 이념적, 실천적 지형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의 권리가 독점적 경제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현 단계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는, 부당하게 시장을 지배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저해하는 재벌체제와 관치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 대기업이 아닌 기업집단으로서의 재벌체제와, 정부의 경제개입 특히 관치금융이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개발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운용 전략의 부작용으로 관치경제 특히 관치금융에 익숙해 있는 정부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으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체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Böhm Bawerk는 기업과 정부를 시장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시장의 섬이라고 한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제와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이익 추구하고 더불어 다른 경제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J. S. Mill이 이야기하는 ‘Harm Principle’이 그것이다. 후대에 O. W. Holmes가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 바와 같이, “내 주먹을 휘둘러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의 코가 시작되는 곳 까지만 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축구경기장의 한쪽편이 기울어져 있는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하면서 경기의 룰이 있고 누구나 열심히 축구를 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 결과에 승복하고 스스로 책임지라고 주장한다면, 아무도 이를 공정한 경쟁이라거나 민주적인 경제 운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2지방선거 이후, 이명박 정부도 ‘친서민·동반성장’, ‘공정사회’에 이어 ‘공생발전’이라는 국정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반응하였으며, 특히 금년 총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모든 주요 정치세력의 어젠더가 되어 있다.

공정사회 또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사회는, 불공정한 구조와 부당한 수단을 통한 과도한 특혜 추구를 제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박탈을 방지하거나 보정하는 사회라 할 것이다. 한편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가 저해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윤을 추구(profit maximizing)하기보다는 특혜를 추구(rent seeking)하는 사회로서, 과도한 특혜와 과도한 박탈이 일어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와 과정에 대한 개혁’ 특히 ‘경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과제인 기업집단으로서의 재벌구조 개혁과 관치금융을 비롯한 관치경제의 개혁 중 재벌구조 개혁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행사의 주최 기관에서 토론자에게 재벌 이슈를 토론 주제로 제시해 주었거니와, 오늘의 주제 중 경제민주화 그 중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재벌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재벌구조 개혁과 관련한 많은 과제들 중에서도 본고는, 구조적 관점에서 논란이 되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실행적 관점에서 법집행절차의 보완 과제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독점규제에 대한 정책과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의 목적과 기능에 근거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주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두 가지 정책 기능 중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양자간 상호출자금지제도 등이 있으나, 잘 알려져 있듯이,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헌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경제현실과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였다고 평가된다. 입법목적과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필연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를 재도입해야 마땅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현 상태대로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와 인력의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사의 생산적 실물투자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이는 단지 재벌체제를 유지 내지는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자본을 이용한 지배목적의 계열사 출자를 제한하고자 운용되는 제도일 뿐인 것이다. 생산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기업경영

은 멀리한 채 부실한 계열사를 정리하지 않고 여전히 비정상적인 가공자본 창출을 통하여 계열사 지배와 사익추구에만 집착하고 있는 재벌의 불합리한 주장에 밀린 채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재벌개혁정책의 후퇴이었던 것이다.

출총제 폐지가 추진되던 당시, 필자를 비롯하여 출총제 폐지를 반대하던 전문가들은 출총제 폐지가 실물투자의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음 두 가지 수단으로만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한 바 있다. 첫째, 가공자본을 이용한 총수의 계열사 지배권 강화 수단. 둘째, 계열사 확대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의 확대 수단.

이것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음이 입증되었다. 경실련이 2011년 4월 기준 자산총액 15위까지의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2007년 50.3조원에서 2010년 92.8조원으로 42.6조원(84.7%)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2007년 40.3조원에서 2010년 55.4조원으로 15.1조원(37.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대 재벌의 연도별 출자총액 및 설비투자 추이 비교

항목	2007	2008	2009	2010	3개년 증감액 (2010-2007)	3개년증감 률
출자총액	50.3조원	63.0조원	67.8조원	92.8조원	42.6조원	84.7%
설비투자	40.3조원	50.8조원	42.1조원	55.4조원	15.1조원	37.5%

또한 15대 재벌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2007년 7.1%에서 2010년 6.2%로 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2007년 99.0%에서 2010년 85.3%로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2007년	2010년	3개년 증감률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	7.1%	6.2%	-0.9%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	99.0%	85.3%	-13.7%

또한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대 재벌의 그룹의 4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동산/임대업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제조업 중 신규편입이 많았던 업종은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신청도 많았음이 분석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장하거나 재도입을 반대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투자활성화를 논거로 들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출총제를 폐지하더니, 역시나 지난번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또 다시 투자활성화를 명

분으로 내세워 출총제 폐지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투자활성화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
그 몇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 등을 통해서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출총제 폐지가 주장되던 당시, 공정위가 2007년 11월 발표한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에 따르면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25개사의 추가 가능한 출자여력은 37.4조원으로, 이는 이들 회사 기출자액(적용제외 후 출자총액) 14.9조원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출자가 어려운 회사는 2개사에 불과하였다.

특히 당시 공정위가 매달 발표하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의하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8년 1월2일 415개(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2008년 11월3일 현재 604개(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로 189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총제와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타 기업에 대한 출자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둘째, 지난 20년간의 출총제 도입 이후 역사가 출총제와 투자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출총제가 신규 도입된 1988년 이후 비례적으로 실물투자가 감소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출총제가 일정 시점 이후 꾸준히 완화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대상 기업집단의 실물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 세 번째로 출총제의 적용을 받다가 출총제를 졸업하여 적용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집단이, 특히 2001년 이후, 꾸준히 있어 왔지만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이로 인해 당해 기업집단들의 실물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본 적이 없다. 네 번째로, 지난 20여년의 출총제 역사에서 적용대상 기업집단과 비적용대상 기업집단 간에 출총제의 실물투자에 대한 제약에 따른 추세적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없다.

셋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다가 그 부작용이 극심하여 다시 재도입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의 출자총액과 실물투자액을 비교해 보아도 출총제 폐지가 실물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출총제 폐지는 총수의 경영권 방어와 가공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경영확장으로 귀결됨을 확연히 보여 준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어 운용되지 않았던 시기인 1998년부터 2002년 재운용되기 전까지를 비교해 보면, 이 기간 중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1997년 16.8조원에서 2001년 50.8조원으로 4년간 200%이상, 3배나 증가하였다.(표1 참조) 이 기간은 IMF구제금융을 가져온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재벌기업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체제를 유지하고 계열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계열사 출자는 200%나 증가시켰던 것이다.

같은 기간 중 설비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 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점에 극명하게 대비된다. 같은 기간 중 GDP는 16.6% 증가했던 점과 비교해 보아도 재벌들이 얼마나 투자는 소홀히 한 채 가공자본 형성을 이용한 지배목적의 계열사 출자에 집착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전술하였듯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2007년 50.3조원에서 2010년 92.8조원으로 42.6조원(84.7%)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2007년 40.3조

원에서 2010년 55.4조원으로 15.1조원(37.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대 재벌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2007년 7.1%에서 2010년 6.2%로 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2007년 99.0%에서 2010년 85.3%로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2008년 상반기 현금금성자산>에 따르면 567개 상장사의 현금성자산은 전년도보다 3.19% 증가한 64조3,515억원이었으며, 특히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전년도 대비 13.85% 증가한 38조1,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보율의 경우 당시 현재 567개 상장사의 경우 690.23%로 전년 같은 시점의 674.97%보다 15.25% 증가하였으며,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전년도 말 762.01%에서 10.56% 늘어난 772.58%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볼 때 지금까지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재벌체제에 의한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이나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총제 재도입 등 여부와는 별개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절차규정이 충실히 보완되어야 마땅하다.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감독시스템 및 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효한 사후규제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후규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이론(異論)이 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자율적인 이익추구와 더불어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피해를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절차(enforcement)규정이 필수적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 막강한 교섭력과 권한을 가지는 재벌기업의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주된 규제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그 수단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에 의한 과징금이나 시정권고 등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행정벌은 외국의 방대한 민·형사상 사법적 처벌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그 중 비교적 강한 경제적 제재수단인 과징금의 경우에도, 금전적 손실은 피해자가 입었고 차후 거래상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해자는 금

전적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형사소송절차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극히 제한적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절차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이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성과를 거두어 개선되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그나마 단순손해액 배상이어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소(私訴) 활성화가 요구된다. 공정거래법 제 56조 이하의 취약한 사적소송 규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의 집행절차 참여가 거의 없게 하는 절차규정이다. 미국의 경우 사소 즉 민간에 의한 소송(私訴, private suit)이 지난 115년간 미국의 전체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의 89%에 달하며 최근에는 94~95%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15년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진 반트러스트법 관련 소송 건수는 총 48,015 건이었으며 그 중 민간에 의한 소송 건수가 42,742 건이며 89%가 넘는다. 최근인 2001년 이후는 총 3138 건 중 민간에 의한 소송 건수가 2,973 건이며 95%에 이르고 있다.

행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에 의한 과징금이나 시정권고 등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행정벌은 미국의 광범위한 민·형사상 사법적 처벌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이처럼 강력한 처벌수단을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요, 반트러스트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공정거래법 집행절차는 매우 다양하게 완비되어 있다. 그 중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절차규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어야 한다. 규제 대상행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공정거래법 제71조의 전속고발권 규정은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12사태 후 5공 군사정권하에서 국보위 입법회의에서 입법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입법하였다. 그런데 이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크게 성숙되었고 나아가 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 군사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소송절차는 연방거래위원회보다 법무부 검찰의 역할이 훨씬 더 막강하다. 그 구제절차도 연방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보다는 소송에 의한 사법부의 사법절차가 대부분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의한 사법절차에 있어서도 정부에 의한 연방법원 소송 중 70%가 법무부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금년 3월, 본인 등의 그동안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탈취에 한해 도입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일반에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액의 3배를 배상케 하는 3배 손해액배상(treble damage)청구 소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도에 대하여는, 징벌적 효과가 충분하여 범법행위를 쉽게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효과가 분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의 시도 시 적발될 가능성을 감안한 기대비용이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의 확률이 감안된 기대이익보다 크게 설계해야 실효성

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실효성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술하였듯이, 손해액의 3배를 배상케 하는 3배 손해액배상(treble damage)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금년 초 하도급거래 기술탈취 행위 제재에 도입된 손해제도에도 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금권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① 사전적이고 관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질서의 규칙을 유지하는 사후적 징벌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② 우리 사회가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유럽식보다는 시장의 규칙을 강조하는 미국식으로의 이동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한미 FTA 등이 미국식 체제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고, ③ 개방화와 세계화로 인해 범죄의 적발과 형사적 제제가 과거보다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과, ④ 기업을 위한 규제는 미국식으로 빠르게 바꾸면서 소비자를 위한 규칙은 늦게 받아들이는 일관성 없는 법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륙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미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특별법 형태로 입법화된 사례에서 보듯이 공정거래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셋째,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는 우리나라에서 증권관련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단소송제나 단체소송제는 미국이 1937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이후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가들에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송절차법 규정으로 도입해, 증권관련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환경관련법, 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경쟁기업이나 하도급기업, 소비자 등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들은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주로 단체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보다 저항이나 논란의 여지가 적은 제도이며,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반대논의나 시기상조론 등은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집단소송제는 소송절차법 규정으로 도입해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증권관련법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고,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단체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토 론 문

신 인 석 교수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이 논문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시의적절하지만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룬 논문이다. 논문이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논문이 취한 입장과 주장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논문의 경제민주화 정의부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I. 개념적 논의

1.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와 다르다

‘민주화(democratiz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민주주의(democracy)의 확산’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래 용례는 정치적 민주주의이고, 그렇게 정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의미는 ‘인민의 지배(rule of the people)’, 즉 ‘구성원에 의한 정치과정의 지배’이다.

그러므로 정치민주주의(political democracy)를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에 그대로 투사하면 ‘구성원에 의한 경제과정의 지배’가 되고, ‘경제민주화’는 ‘구성원에 의한 경제과정 지배의 확산’이 된다.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경제민주화는 본질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와 대립된다. 시장경제체제는 구성원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과정의 지배가 아니라 ‘시장에 의한 경제과정의 지배’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로 운영되는 경제체제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은 시장에 참가할 권리와 기회에 있어서는 균등하다 하여도, 경제과정의 지배에 있어서는 균등하지 못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과정의 지배는 투표로 이루어진다. 공동체 구성원은 1인 1표로 균등하게 ‘지배권’을 행사한다. 경제과정에서 시장을 통한 의사결정은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의 원리이다. 경제력이 우월한 구성원이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우월하다.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므로 개인에 기초한 민주주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경제적 자원배분체제로서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치민주주의의 투영된 개념으로 경제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정의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과거 경제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사용된 예가 없지 않다. 사실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용례가 그래 왔다. 1920~30년대 미국 진보주의 운동의 논리가 그랬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 또는 산업화 이전 농업경제를 이상적인 경제체제로 간주하였던 19세기 미국의 제퍼슨(Jefferson) 정치철학에 입각하였다. 그리고는 대기업과 민주주의 질서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독점자본, 금융자본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유럽의 경우에도 경제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는 순화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전통 아래 거론되어 왔다. 발표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S. Webb 등이 그 예이다. 보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주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 사회민주당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사회주의 혁명을 폐기하는 대신에 순화된 사회주의(노동자에 의한 경제과정지배)로 1950~1970년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도입한 정치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2012년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해석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제민

주화를 해석할 경우 지난 100년의 역사가 보여준 사회주의의 한계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1항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천명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그 전제 아래 2항에서 보조적인 의미로 언급되고 있다.

헌법 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경제민주화이기 때문에 2012년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민주화’의 해석은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홀리가 버린 사회주의의 잔영아래 주장되었던 시장경제질서의 대체제로서 경제민주주의를 해석해서는 안된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질서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다.

어떻게 다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1차적 장치이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장치는 아니다.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장치가 다시 존재한다. 자유주의 헌법이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헌법을 위반하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은 무효이다. 이 것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또는 제한 자유주의(constitutional liberalism)의 질서이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의 체계는 민주주의가 기본이되, 헌법에 의해 걸러지는 방식이다.

경제과정의 경우 의사결정의 기본은 시장경제이다. 단, 헌법에 의하면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의사결정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하여 조정될 수 있다. 헌법의 표현은 추상적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 의사결정의 기본 속성인 ‘효율성(efficiency) 원리’를 ‘공정성(fairness) 원리’로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시 개입할 수 있다.

요컨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차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주주의는 정치적 과정에서는 우선적인 지배원리이다. 경제적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우선적인 지배원리가 아니다. 지배원리인 시장원리를 보완하는 제약조건의 지위이다. 둘째, 경제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공정성(fairness)을 의미한다.

2. 공정성(fairness) 확대로서의 경제민주화

‘공정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치철학적인 정의론 논쟁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 경제정책에 논의를 국한할 경우 ‘공정성’은 경제이론에서 확립되어 있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즉

모든 경제주체의 후생증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주어진 시장환경이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폐쇄되어 있던 경제가 개방되는 경우이다. 경제원론 교과서에 흔히 등장하듯이 경제의 개방은 경제의 소비가능집합을 확대한다. 그러므로 개방은 경제주체 모두의 지지를 받을 기반이 있다. 그러나 과연 모든 경제주체들이 실제로 개방을 지지할 것인가는 실제 그들의 후생이 증가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증가(즉 Pareto 개선)할 것인가? 그 답은 개방에 따른 이익증가분이 어떻게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되는가에 달려 있다. 특정인에게 이익증가분이 독점 분배된다면 나머지 경제주체들이 자유계약을 지지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관점에서 개방은 파레토 개선을 가져오지 않았고 긍정하지 못하다.

왜 경제‘민주화’로 부를 수 있는가?

공정성은 ‘구성원의 지지’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연관된다.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경제적 과정의 지배가 구성원들에 의하여 지지되기 위해서는 공정성(후생증가가 모든 경제주체에게 해당)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즉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가는 개입할 수 있다. 이 것이 21세기 한국에서 경제민주화의 의미이어야 하고, 헌법과 합치되는 해석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경제민주화를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중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 및 주요 경제문제의 의사결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적절한 이해와 정의이다. 이미 경제사회질서에 대한 실용가치가 용도 폐기된 경제적 과정의 정치적 과정에 의한 지배, 즉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관점의 이해와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질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대립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II. 왜 지금 공정성 확대로서의 경제민주화가 쟁점일까?

1. 시장환경의 변화와 양극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시장환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첫째는 대외환경의 변화로서 ‘세계화’이다. 둘째는 대내적인 변화로서 서비스업의 자유화이다. 유통업, 방송·통신, 문화서비스 등등 과거 외국자본과 대기업 자본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던 분야의 진입규제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시장참여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목적달성, 즉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커진 파이의 분배이다.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경제주체들은 당연히 이 변화가 자신에게 유리한 변화인지를 묻게 된다. 소수는 이익을 보고 대다수는 손실이 있다면, 즉 파레토 개선을 가져온 변화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변화의 ‘공정성’과 국민적 지지(민주성)은 의심받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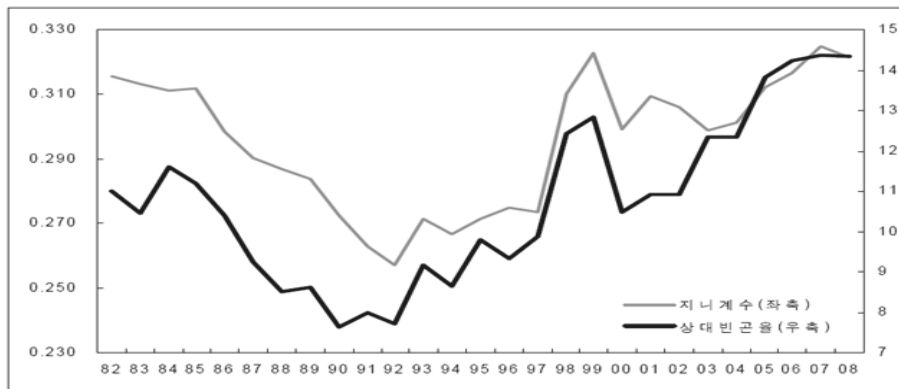
지난 10년 과연 파이가 커졌다는 증거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이득이 일부에게만 돌아갔다는

증거가 동시에 적지 않다. 바로 양극화이다. 현재 우리경제에서 양극화는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분배, 고용구조, 기업성과 등 세 측면에서 양극화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

①분배의 양극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우려되는 현상은 분배지표의 악화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고성장이 분배개선을 동반하여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개선되는 모범 사례로 지칭되곤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률이 상승하며 분배가 악화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률 추이(1982-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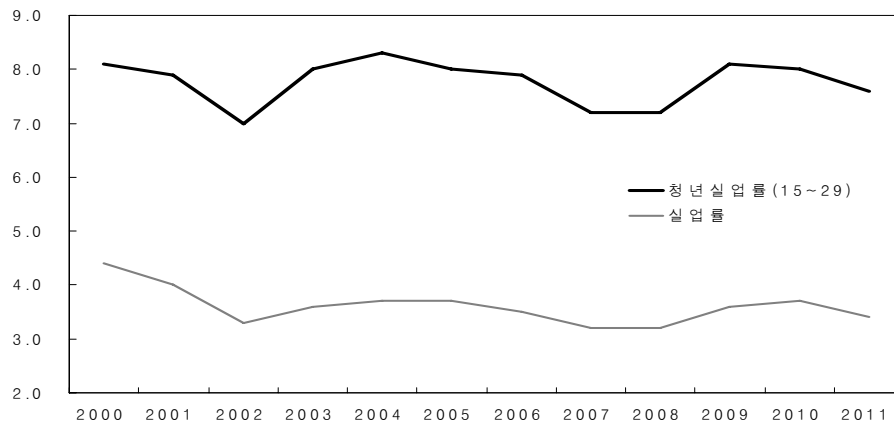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median income) 50%이하인 인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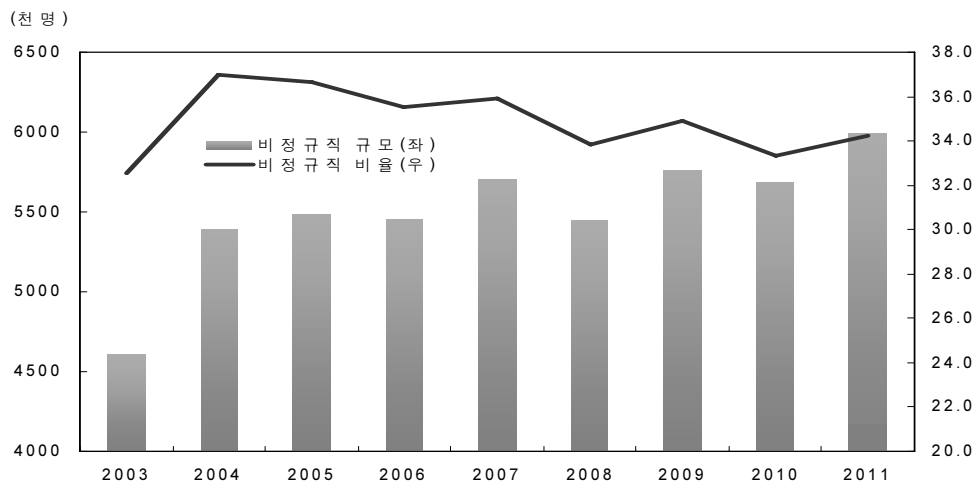
② 고용구조의 양극화

고용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은 뚜렷하다. 고용률 등 총량고용지표의 추이에서는 현저하게 악화된 모습이 없지만 고용의 질은 지난 10년간 뚜렷하게 악화되었다. 먼저 청년실업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전체 실업률은 높은 수준이 아니나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 실업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전체 고용률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고용구성상 비정규직의 비중이 30%를 넘고 있다.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



비정규직 비중 추이



③ 기업성과의 양극화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과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성과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로 성장한 재벌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성공하며,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더욱 상승하였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최근으로 오며 크게 상승하였는데, 1981~90년 기간 18%에서 2000~08년 기간에는 84%로 높아졌다. 그 결과 세계화에 성공한 이들 기업과 나머지 기업들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업간 성과격차 확대는 불공정 거래 문제, 문어발 확장 문제, 일반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의 공정거래관련 논란을 야기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며 성과공유 문제가 제기되었고 하도급업체와의 불공정거래 문제도 보다 부각되었다. 성과가 우수한 재벌을 중심으로 계열사가 증가하였고 이에 문어발 확장에 의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논란, 총수일가의 사익추

구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대두되었다. 2008~2011년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매년 76.3개, 자산총액은 11조원, 참여업종은 31.0개씩 증가하였다. 이는 과거 6년간(2002~2008년) 증가폭(계열사 수 33.5개, 자산총액은 43.5조원, 참여업종은 14.2개)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추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열수	540	573	636	711	799	827	940
증가율	-1.6%	6.1%	11.0%	11.8%	12.4%	3.5%	13.2%

2. 경제학계의 시장경제에 대한 시각변화

다음으로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경제학의 시각변화이다. 최근까지도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의 ‘자발적’ 거래는 효율적이고 동시에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여기에 대한 두 흐름의 이론적인 논박이 있었다. 먼저 이제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일부로 흡수된 정보경제학의 성과는 정보비대칭성과 대리인 문제가 존재할 때 시장의 자발적 거래가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다. 행태경제이론은 경제주체의 합리성(rationality)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자발적 거래의 효율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경제학계의 시장에 대한 생각이 ‘시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하다’는 시각에서 ‘시장은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III. 경제민주화 정책

1. 공정한 경쟁환경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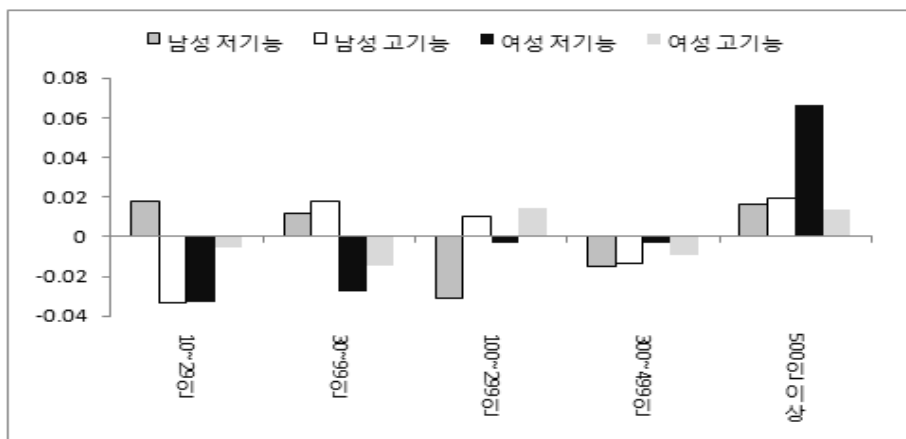
불공정거래 규제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된다. 기존의 공정거래정책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되면 사후적으로 징벌하는 방식이다. 경제민주화 시대의 공정거래정책은 불공정거래의 잠재성이 높은 시장구조에 대해 감시하고, 공정거래의 표준을 제시하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일감몰아주기 등의 근절이 일차적인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

반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경제민주화=재벌해체’는 오도된 시각이다. 재벌해체와 같은 소유권 제한 규제 또는 구조규제를 정당화려고 한다면 공정성만이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의 정당화가 필요하다. 1998년 경제위기 직후라고 한다면 재벌이라는 소유지배구조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시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 같은 정당화의 실증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강소기업 육성

공정경쟁환경의 확립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양극화’ 현상의 한국경제 특유 원인은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 정체’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 기업의 성과 차이는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도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좌우하며, 한국은 경제 발전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되어온 특성을 갖고 있다. 그 결과 국제경쟁력이 있고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강소기업’의 부재가 한국 경제에서 양극화의 산업측면 원인이다. 중소기업의 정체는 최근 고용구조 양극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양상에서는 기업규모(사업체 규모)별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 바, 일자리 창출 정체와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중견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정체이다.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분포를 보면, 남성고기능 근로자의 경우 300~499인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정체가 일자리 창출 정체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970년대 이후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중소중견기업 강화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중 분포(2004~2007)



3. 경제민주화 정책의 확장성

여기서 공정경쟁정책과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 만을 언급하였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범위가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시장경제에서, 특히 한국 경제에서 국가는 이미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통화·재정 등 거시정책, 다양한 산업정책, 금융정책 등 시장경제의 모든 영역과 의사결정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이미 존재한다. 경제민주화는 제반 경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목적이 효율성 추구에서 공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금융정책의 경우, 과거 ‘금융산업의 성장동력화’가 주된 정책목표였다고 한다면, 경제민주화 관점의 금융정책에서는 ‘서민주거금융의 안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처럼 경제민주화는 몇 몇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넘어서, 제반 경제정책 추진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4.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의 관계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는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의 자발적 운영을 공정성 원리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이다. 이때 ‘공정성’은 결과(분배)의 공정성과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모두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제도를 분배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이해할 경우 사회복지제도는 경제민주화이 수단적 지위에 있게 된다. 이 경우는 넓게 이해한 경제민주화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책적 관점에서의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공정성 추구에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이 편리하다. 분배의 공정성 및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독자적인 영역의 논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는 공정성을 추구하는 두 수단이다.



김 광 기

중앙일보 경제선임기자 겸 경제연구소 부소장

경제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의 모색-재벌 지배구조 개혁과 복지재원 확충을 중심으로-

“우리는 사회로부터 믿음을 얻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어려운 이웃,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사회 발전에 동참해야 합니다.(이건희 삼성 회장, 2012년 1월 신년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협력, 약자 배려, 신뢰와 협동 등이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 재벌 그룹의 총수들은 자기 그룹이 ‘국민기업’임을 자처한다. 개발독재시대에 국민의 도움과 희생, 정부의 전폭적 지원 등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재벌의 있을 수 없었을 터이니, 국민기업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듯하고, 그 보답으로 사회적 책임을 애기하는 것도 당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는 판판이다. 재벌이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불만만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제일의 표적이 바로 재벌이다. 재벌을 개혁하자는 차원을 넘어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경제 양극화의 주범으로 재벌을 지목하고, 재벌이 변해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 등의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란 얘기다.

정치권도 이런 논의에 본격 가세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해야 표를 얻고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권주자들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벌에 대한 정책은 크게 다를 게 없고, 재벌은 변화를 강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공룡으로 커진 재벌이 제 몸을 추스리지 못해 주변에 먹을 것이란 닥치는대로 섭취하고, 못먹을 것도 밟아 망가트리기 일쑤다. 종업원과 납품·협력업체, 소비자 등과 상생하려는 ‘사회적 책임’은 뒤로하고 자식들에게 사업을 나눠주고 경영권을 넘겨주기에 분주했다. 재벌은 자기 통제능력을 상실한 듯 빵집·커피숍에서 동네 슈퍼까지 파고 들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매맛을 할 일을 한 게 맞다. 하지만 매를 든 입장에서 무엇을 꾸짖고 어떻게 고쳐줄지 곰곰히 따져야 할 일이다. 회초리로 고칠 것을 쇠팡망이로 가격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재벌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춧돌임에 틀림없다. 10대 그룹의 국내총생산(GDP)과 증시 시가총액 비중은 각각 50%를 상회한다. 재벌이 한꺼번에 쓰러지면 국민 경제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재벌 개혁을 추구하되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하게 소를 몰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 재벌개혁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복원으로부터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은 주식 의결권의 온당한 행사다. 과거 군부독재 시대를 끝내고 정치민주화를 이룬 것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되살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직접 뽑도록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주권력을 충실히 대리 행사할 인물을 이사회 멤버로 당당히 진출시키는 방안이다. 일반 주주들의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한결 투명해지고, 오너 가문의 전횡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기업의 주인은 주주 이외에 종업원, 채권자, 납품업체, 지역사회, 소비자, 정부 등 광범한 이해관계자들로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재벌의 오너도 기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 범위에 있는 지분율에 한해서다. 다른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무시한 채 혼자 주인인 것으로 알고 행동한다는 분명 ‘독재’다. 주식을 상장해놓고는 “내 회사를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무슨 상관이나”는 태도를 보이는 재벌 총수나 그 가족이 많다. 상장회사(public company)의 기본 의미도 모르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럴 바에는 비상장 가족기업으로 남았어야 한다.

헌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듯, 일반 주주들의 경영권 참여도 헌법에 기초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보장돼 있다. 다만 이제껏 일반 주주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세를 규합하지 못해 방치돼 왔을 따름이다. 창업자 가문의 소유경영자들은 이를 틈타 일반 주주들의 권리는 무시한 채 군부독재 시절 ‘통일주최국민회의’ 방식으로 등기이사를 뽑아 ‘거수기’ 이사회를 구성해 전횡을 일삼았다.

과거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도 그랬다.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150년 주식회사 역사 중 겨우 20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1920년대까지는 창업자 가문이, 그 뒤로는 CEO가 된 전문경영인이 경영의 전권을 휘둘렀다.

기업경영 민주화의 계기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중으로 흩어져있던 주식이 다시 집중되면서 마련됐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캘퍼스) 등이 주주가치의 훼손을 막고 장기 투자수익을 높일 요량으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 시작했고,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기관투자자서비스) 같은 의결권 자문·대리행사 회사가 생겨 이를 촉진했다. 하지만 미국 또한 아직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의 금융자본에 대항한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자본주의에도 주주권리 회복 운동 조짐이 일고 일고 있다. 국민연금과 주식형펀드 등이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에 눈을 뜨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몸풀기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지주는 올 봄 주주총회를 앞두고 1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사외이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반발과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논란이다. 정부와 정치권력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막후에서 조정할 경우에 일어날 폐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재벌이 정치권력의 포로가 되고, 이에 따라 경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크게 훼손될 것이란 반론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물론 재벌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법을 바꿔 이를 제도적으로 아예 차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지배력을 순화하고 정치권력의 막후 개입 유혹을 제어할 현실적 대안이 있다. 주요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이 연대하는 ‘주주협의체’가 그것이다. 사전에 주주들이 주주총안건을 놓고 협의해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정치권력 등의 개입 욕구를 노출시키고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내는데도 유용하다.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를 팔아주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과 갑과 을 관계 때문에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재벌 계열인 경우가 많고 금융지주회사들도 재벌급 권력 소유자들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이들의 주주이면서도 감히 맞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연기금 및 다른 자산운용사들과 연대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그 우산 아래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돕는 ‘의결권 자문업’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미국의 ISS가 대표적인 롤모델이다. 의결권 자문업체는 주주들을 대신해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정밀하게 검토해 의결권 행사의 찬반 여부를 컨설팅해 준다. 또 기업지배구조의 위험 요소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주들에게 알려준다. 더 나아가 일반 주주들의 흠어진 의결권을 모아 대리 행사(proxy voting) 서비스도 한다. 한편 일반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주총 표결의 전면 전자투표화도 바람직하다.

주주행동주의는 SK와 KT&G 처럼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는 사례 등과 맞물려 우려와 반발도 크지만, 어차피 한국도 가야 할 길이다. 법이 보장하는 주주 의결권을 복원시키고, 이사회 활동을 주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만으로도 재벌 개혁은 큰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여도

주주 이외에 종업원, 채권자, 소비자, 납품업체, 지역사회 등 광범한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는 경영도 요구된다. 그 중 종업원은 기업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주체라는 점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만인 일반 주주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삼성이 기업지배구조의 롤모델로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을 설정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창업 이후 5대째 창업자 가문에서 경영권을 승계해오고 있는 점에서 분명 연구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다.

하지만 발렌베리가 삼성과 다른 점은 종업원도 기업의 주인으로 인정해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를 공식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웨덴은 1938년의 노·사·정 대타협인 '샬트요바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서 재계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대신 투자와 일자리 창출, 80%의 배당소득세, 사회공헌 등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노조는 산업 평화를 위해 분규를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스웨덴 기업들은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멤버로 참여시키기 시작했는데, 차후에 스웨덴 정부는 상장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에 3명 이상의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면서 오히려 노사분규는 줄어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등 기업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용자가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노동자는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조직에 더욱 몰입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유럽 기업들에 일반화된 것으로, 독일의 경우도 집행이사회 위에 감독이사회를 두고, 감독이사회는 절반을 노동자 대표에게 할애하고 있다.

발렌베리그룹이 스웨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발렌베리는 가문 내 후손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만, 재산 상속은 개인 간에 직접 하지 않고 재단을 통해서 한다. 개인이 직접 보유한株式이 없는만큼 가문의 지분 보유에 따른 배당금이나 자본차익은 모두 재단에 귀속된다. 재단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교육이나 연구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한다. 스웨덴 법은 국내 공익재단에 대하여 수익금의 80%를 연구 및 교육 분야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웨덴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발렌베리 그룹이 잘 굴러가 순익을 많이 내면 결국 스웨덴 사회가 윤택해진다고 믿는다. 발렌베리는 스웨덴 국민들과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며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채권자와 정부도 이해관계자의 일원으로 기업 경영에 일정 부분 간여할 권리를 갖는다. 기업의 주인으로서의 몫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영에 있어 그렇다. 기업이 경영을 그르쳐 파산할 경우 1차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며, 2차적으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상황을 맞으면 결국 국민의 혈세가 쓰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시도할만 하다고 본다. 재벌오너의 전횡 및 경영권 승계 문제,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문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문제, 종업원의 경영참여 문제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모여 일괄 타협하고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앞서 소개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좋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이제껏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 실천은 기업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채권자, 기업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난마처럼 뒤얹혀 논란만 거듭하며 허송세월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와중에 기득권자인 재벌과 귀족노조 등의 입지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고, 일부 정치 세력이 개혁을 구실로 자기 잇속만 확대하기 일쑤였다. 이명

박 정부에서 ‘영포라인’ 등 정치세력이 비리를 저지르며 금융지주회사 및 민영화한 공기업 등의 요직을 독식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년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방안이 대선 과정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복지재원 확충과 경제력 집중 차단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자본주의 4.0시대에는 정부가 역할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갈수록 불어나는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 사회적 약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 한편 공공분야에서 복지 서비스형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먼저, 대기업과 부유층에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부터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린 상황에서 대기업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은 문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에게 정부가 헛돈을 쓰는 것이나 다름 없다. 대기업의 대규모 장치산업 투자에는 고용유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부유층에 집중되는 금융 비과세 조치들도 손봐야 한다.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해 10년이상만 투자하면 무조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과거 고도성장시대에 기업의 장기 산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했던 게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에는 현금이 넘치고, 중산·서민층은 10년 이상 내다보고 저축을 할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저축성보험 상품은 거액자산가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수백억, 수천억원의 뭉치 돈을 넣어도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당장 없애는 게 어렵다면 투자액 2억~3억원 정도로 비과세 한도를 정하고, 자산운용사의 적립식펀드에도 10년 이상 상품에는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형평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capital gain)에도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가 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거액 자산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주식시장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 대신 주식거래액에 무조건 일정률의 세금을 떼는 증권거래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손해를 보면서도 자주 거래하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세금을 무는 반면, 장기 투자하는 거액,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없는 점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출입을 조장해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부자 증세도 불가피해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극화의 최정점 위치에 있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부담을 다시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받으면 돈을 더 쓰고 그게 서민경제로까지 흘러든다는 가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여 양극화의 바닥쪽에 직접 투입하는 게 현실적 처방이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담당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은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의 폐해를 차단하는 일이다. 대부분 재벌이 업종 전문화를 외면하고, 금융·건설·유통·광고·식품 등 업종에 문어발식으로 무차별 진출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의 가장 큰 폐해는 각 분야의 전문업체가 성장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세계적인 증권회사이나 건설·광고회사가 탄생하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재벌들이 인하우스 물량을 기초로 시장을 철저히 나눠먹기 때문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전문 기업이 성장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적절한 기준을 정해 재벌의 비전문 다각화를 축소시켜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자식들에게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기 위해 계열사를 만들고 일감을 몰아주는 일은 엄단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 문제도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 갑과 을의 협상력이 워낙 크게 벌어져 시장에 맡겨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피해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금융권력의 집중도 완화해야 한다. 외환위기 뒤 한국의 금융산업은 은행계열의 6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완전 재편됐다. 이들 금융그룹은 독과점적 우위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땅집고 헤엄치기식 소매금융에만 치중하고 있다. 담보가 없는 저소득·중산층 소액 금융거래자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사금융을 전전하며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금리의 단층구조는 갈수록 심해져 사업실패나 생활고에 따른 연체 등으로 일단 신용등급이 나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기 힘든 고금리 대출자로 내몰리기 일쑤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끊임없는 합병을 통해 대형 금융그룹으로 거듭났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소비자 편익 증대 등 어느 쪽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만 남겼다. 정부는 은행 라이선스를 다시 발급하는 등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결 론

본 토론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본가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재벌을 해체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기업이 생산한 부의 분배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벌 오너의 전횡은 차단해야 하며, 그 현실적 대안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종업원 주주 등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그들의 대변인을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재벌의 오너 가문은 사회공헌 재단 등에 주식을 넘기고 일상 경영도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그룹의 전략과 비전 제시, 대규모 투자 결정, CEO 선임 등에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발렌베리그룹과 엇비슷한 선택이다.

재벌과 창업자 가문은 또한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 및 공헌 활동을 통해 과거의 허물을 벗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록펠러나 카네기 등 재벌이 걸어간 길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줄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경제개발계획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 토론자들은 이미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은 그들의 대표를 제대로 뽑고, 약속한 활동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계속 관찰하고 압박해야 할 것이다.



<부 록> 본 연구회 토론회 관련 기사

[뉴스시즈아이즈]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시민이 관심 가져야 복지국가 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618_0011201273&cID=11203&pID=11200

기사등록 일시 [2012-06-18 15:28:08]



【서울=뉴스시즈】이득수 기자 = 복지문제는 경제민주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연말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히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국가재정의 능력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시급한 부문에 배정해야 할 한정된 자원을 복지에 쏟아 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혁, 좌우 이념에 따라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민간단체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중도적 입장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탐구를 전개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작은 단체이지만 매년 3~4회의 토론회를 열어 복지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콘텐츠를 축적해오고 있다. 26일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중앙대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이의영 상집위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 질의응답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를 설립해 3년째 이끌고 있는 이정숙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비롯해 그의 복지관을 들어봤다.

- 선진사회복지연구회를 설립한 취지는?

“우리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연구회는 2009년 10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나라도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

다는 취지에서 창립했다. 이념을 초월하고 정파를 떠나서, 또 복지의 전문가 비전문가, 종사자 비종사자 등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 연구회에 구성원이 되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며 출범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대해 고민과 정책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회의 이런 작은 몸짓이 나비효과랄까? 복지는 일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정책이라 여겨졌던 것이 국가 중요어젠다로 떠오르며 그 수혜대상자도 중산층까지 확대 될 정도가 되었고 온 국민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 연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수급자들의 제하나 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음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이다.

또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엔 발표 자료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시리즈’로 매주 7200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벌써 42회까지 나갔다.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페, 학회에도 올려 토론회 당일 시간을 못 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복지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귀한 토론 자료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 이 회장께서 생각하는 ‘선진사회복지’란?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홍보차 내한해 한 대학의 노천극장에서 열린 강의를 한 적이 있어 참석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를 하게 한 강의였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즉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되고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 가는데 우리 인간의 가치, 규범, 도덕, 꿈과 희망은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해, 또 돈에 의해 박탈당해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 복지,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 정부의 복지정책과 총선에서 앞 다퉈 내놓은 복지공약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 2012년 내년 총지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28.2%인 92조원이 복지예산이다. 또 (2000~2007)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14.2% OECD 국가 평균 6.3% 대비 2.3배 높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복지국가 반열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2007년)은 아직도 GDP대비 8.1%로 OECD 평균(19.8%)에 비하면 더 확충해야 한다.

국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13개 부처에 걸쳐 23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이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연계성과 통합성이 낮아 중복이 되거나 누수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현장 방문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전달체계상에서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각 당,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복지와 관련해 많은 정책을 내 놓았다. 실천이 문제다. 가급적이면 꼭 실천해야 한다. 만약 그 당시 한 표가 아쉬워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공약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 정치권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기 때문이다.”

- 최근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 찾기가 한창이다.

복지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퍼주기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자활자립 할 수 있게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재임 8년간 일자리 1600만개를 창출하고, 2800만명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업적 때문에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87%에 달했다. 그 비결에 대해 “정치가 뭐냐고요? 어머니의 마음이죠”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복지에 대해 논리나 말의 성찬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 즉 복지가 먼저냐를 따지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도 복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하면서도 5.5%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면 투명한 사회, 신뢰의 정치,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을 조언 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 11%가 노인인구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거기다 작년부터 은퇴가 시작된 712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건강문제가 43.6%, 경제적 어려움이 38.4%(2008년 통계청)로 나타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노인의료비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경륜을 가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노인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노후준비교육 등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는데....

“이태백, 사오정, 삼포시대, 허니문푸어, 하우스푸어 등 수많은 신조어는 고용의 질과 양의 불안에서 생겼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2.2%로 치솟았고 켄거루족, 신 켄거루족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좌절, 분노, 자포자기는 자살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으로 표출 되어 사회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과 복지는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소득배분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작동할 때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산출한다고 한다.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창업지원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본다.

-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는지?

“정치권에서는 헌법 119조를 근거로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가 돼야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복지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이고 경제민주화는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께서 제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있었지만 정작 복지학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복지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고자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토론회를 가지려 한다.

leeds@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스 제282호(6월25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2012년 3.9분 연구회 주최 토론회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관련 언론 기사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80342

데일리안
YOU IS THE NEWS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와 고용이 함께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조성완 기자 (2012.03.13 20:36:43)

◇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를 열고 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공

4·11총선을 앞두고 복지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와 고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돼 상호보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면서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을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며 납세자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도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힘을 실었다.

이 과장은 해결방안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일을 통한 복지, 노동시장참여형 복지 체제를 구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가칭 ‘고용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8546>



총선 앞두고 "복지 제대로 알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선심성 복지정책 경계해야"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박기환 국민대 교수 등 학계서 복지정책 토론
이정숙 회장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고려해 복지정책 펼쳐야..."

- 최종편집 2012.03.09 00:25:12
- 윤희성 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9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박기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이상적인 복지는 없지만 합리적인 복지는 있다고 빔 쿽 네덜란드 총리가 말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토해내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정치인들 스스로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선거가 끝난 뒤 남발된 복지정책은 시민의 분노로 돌아와 정치인들은 바로 응징 받게 돼 있다”며 “각 정당은 모두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은 생각하며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기념해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인복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8627> 뉴데일리(2신)

퍼주는 데 정신없는 현실정치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 제대로 접근해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학술포럼 개최

학계, 행정가, 연예계 인사 등 모여 복지정책 논의

- 최종편집 2012.03.10 00:23:57
- 윤희성 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참여자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이정숙 회장,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기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

지난해 무상급식 문제가 복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복지 관련 공약들이 각 정당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공약들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들일까? 또 복지공약이 이름처럼 모든 서민에게 고른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긴급 토론회를 주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숙 회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여, 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기대하고 환영할 수는 없다”며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국민부담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할지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와 노동시장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진정한 복지가 가능하다”며 “민간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재원은 세금으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되는 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고 1차 분배가 진행된 뒤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다시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복지지, 가난한 사람만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복지는 소수의 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간다는 것은 복지의 원천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소득이기에 고용 없는 복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은 “서구유럽의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논의됐던 것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체계의 수준에서는 성급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비용도 높고 미래를 대비해 통일비용으로 만들어 뒀던 국고의 여유분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모두 다 쓴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 란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이사장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http://www.news1.co.kr/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309_0010709304&cID=10201

&pID=10200 뉴시스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이룩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2-03-09 18:35:07]

【서울=뉴시스】 이득수 기자 = ‘복지와 고용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명제 하에 양자의 동시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과장, 국민대 경제학과 박기환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홍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 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과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을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며 납세자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가는 복지국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복지 거버넌스(공공행정)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미출(일반시민 대표)씨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이 사회와 정부에 대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을 가로막는 주범은 재벌이라고 규정했다. 재벌이 중소기업 고용업종을 침탈해 재벌 일가의 배를 채우느라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희생

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박씨는 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복지에산으로 취업학원과 직업전문학교에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형편없다며, 즉시 지원을 중단시키고 취업전문 기관을 대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토론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환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공복지에 대한 요구급증,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새로운 성장동력 요구 등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노동시장참여형 복지(Activation) 체제를 구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 하는 가치 ‘고용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leeds@newsis.co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309153414791&p=yonhap> 연합뉴스 (1신)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2012.3.9 jjihopar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6> 연합뉴스 (2신)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3-09 15:32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시민 박미출씨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12.3.9

jihopark@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5> 연합뉴스 (3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7> 연합뉴스(4신)

“배분개선 없는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제 세계화 현실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

복지와 고용 유기적 결합된 친화적 정책 필요

고용확대 막는 우리경제 모순해결은 ‘재벌해체’

시장경제에서 이뤄지는 1차 배분구조의 개선 없는 복지는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9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경준 교수는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가 돼야하며, 고용 또한 복지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또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뒷받침과 복지 거버넌스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정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적이다. 성장은 보편적복지의 지속 가능성에도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일례로 베버리지의 보편적복지를 대표하는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저성장 때문에 연금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어 대부분의 중산층을 민간연금으로 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금까지의 성장과는 다른 토건과 물적자본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의 축적에 기초한 생산성주도 성장, 혁신 중심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또 복지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는 협애한 복지 개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복지는 대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내수 창출 정책이어야 하며 고용 불안정을 억제하는 고용창출 기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연령층이 빈곤에 빠지기 전에 개입해 경제 재도약의 동력을 보존하는 미래대응적인 것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반 시민 토론자로 나선 박미출 씨는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우리경제 모순구조 해결의 지름길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재벌 일가의 가족 구성원인 고위 임원 1명의 연봉이면 근로자 수 십 명을 고용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해당 기업에게도 이익이 됨을 잘 알면서도 재벌들은 가족을 늘리면서 엄청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을 해 2교대 근무를 하고 받는 임금과 일하지 않고 쉬면서 받는 실업수당 중 실업수당이 더 많은 금액이라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양산 된 위정자들의 복지정책이 낡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 관계자들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써의 복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라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복지는 결코 혜택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며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위원장은 또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24130  성남일보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정책 토론회 연다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송명용 영상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경준 교수(성균관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재홍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부서장,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출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0030.html 

조선일보플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378741> 뉴시스 오늘의 일정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나눔과 봉사 토론회' 성료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강철희 교수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적게 기부"

- 최종편집 2011.12.21 16:08:20



내년 총선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 문화에 대한 토론헤이 마련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헤를 열었다.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소프라노 이윤순씨가 축하를 불렀다.

이날 토론헤를 주관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주년 기념을 겸한 올해 마지막 토론헤다. 연말을 맞이하여 평소보다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시기이므로 기부, 후원 및 나눔과 봉사를 주제로 한 토론헤를 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빈도는 부유층이 더 많이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유층이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기부하고 있어 기부 노력도가 낮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2008년 국세청 통계 기준 소득 수준별 개인 기부에서는 소득 상위 90%대(최상위 100%) 부유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낮고, 소득 20%대의 하위계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노력도란 소득 수준 대비 기부금 비율로, 소득 20%대의 기부 노력지수는 0.79, 소득 90%대 부유층의 기부 노력지수는 0.47이었다.

강 교수는 부유층의 나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유층의 향후 기부의향이 98.5%이고

이들이 기부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과 보고를 바란다"며 부유층 나눔 모형 개발, 계획기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획기부란 현금, 부동산, 보험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기부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부형태로서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운용과 향후 계획을 수립해 기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단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박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박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수요 확대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복지자원이 중요하다"며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3조 원 가량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은 단체나 지역사회에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원봉사나 회사제품 기부, 회사 보유시설의 개방·공유 등 다양하다. 박 국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활동이 '자원봉사'라고 말했다. 2010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전체직원의 76%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업이 43.2%나 된다.

박 국장은 "사회공헌활동은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 역시 유·무형의 이익을 본다"며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나눔봉사 토론회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부금 규모가 0.8%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기부현실과 앞으로의 바른 기부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 2주년을 맞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철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평균기부금액은 높지만 소득에서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유산 등 유무형의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 마련과, 나눔의 가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재능기부를 통한 기부효율성 증대 방안 등 나눔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기부문화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기영 기자

- Copyrights © CTS기독교TV. <http://www.ct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뉴스시스】 강수윤 기자 =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단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곽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날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전 보건복지부 장관)와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소프라노 이윤순씨가 축하를 부른다. shoon@newsis.com



소득 상위 10%대 시민 기부노력 “꼴찌”

기부노력, 하위 20%대 시민 0.79 vs 상위 10%대 시민 0.47

강철희 교수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 촉구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규모가 17조원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 시민의 기부노력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2주년기념 제8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철희 교수에 따르면 세분화된 기부처별 기부금 서베이 분석결과 종교포함 개인기부금 규모는 2009년 총 17조4940억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GDP의 1.65%에 이른다.

강 교수는 “그러나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시민의 경우 특히, 소득수준 상위 10% 시민의 기부 노력 정도가 가장 낮았다”고 주장했다.

소득 수준별로 기부노력의 정도는 소득수준 하위 20%대 시민이 0.79%p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위 40%대는 0.65%p, 하위 60%는 0.57%p, 하위 80%는 0.48%p였으며, 하위

90% 즉, 상위 10% 시민은 0.47%p로 기부노력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 75%, 재단 13%로 개인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기부 중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나눔의 몫은 35~5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등 이들에 의한 기여가 절대적이다.

강철희 교수는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부유층에 의한 모범적 모형의 실재를 관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미국과 같이 상위 부유층 1%에 의한 개인 나눔규모 중 35%까지의 기대는 가능하지 않으나 일정한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나눔행동은 계층간 사회적 거리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자본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또 기부 활성화를 위해 ▲부유층 나눔모형의 개발과 촉진 ▲유산기부의 확대 및 계획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정기적 나눔 실천 및 나눔교육의 제도화 ▲세금혜택 등 관련된 제도적 유인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도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됐으며,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또한 확대돼 나눔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확대와 더불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세법상 용역기부를 자원봉사 등에 확대하는 등 물질적 나눔 뿐만 아니라 재능 또한 나눌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도입된다면 일대 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여론조사에서 58.3%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바라고 있다”면서 “기부문화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에서 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는 “기부문화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할 때 아직 세상이 더 살만하다는, 더 노력해 볼만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고문은 “한국의 기부는 미국의 2.2%에 비해 0.8%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는 개인기부와 법인기부를 합쳐서 볼 때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과 자아실현 및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가짐으로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며 “국민 개인 한 사람 한사람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오 고문은 “나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부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은 “나눔운동은 착한 마음만으로만 하기보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체계를 갖추어 하면 끊임없이 계속돼 확산되는 운동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기증하고 자원봉사를 할 의사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방법을 시스템화해 물 흐르듯이 원하는 사람은 다 나눔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범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은 “나눔확산을 위해 생활 속의 쉬운 나눔, 사회적 인정 강화,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모금 기관의 신뢰성 제고, 나눔국민운동 전개 등 5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그간의 나눔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추진할 나눔정책은 ▲나눔의 제도화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 등이다.

한편 광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상생과 나눔을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대석 사무국장에 따르면 사회복지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2조8735억원이 사회공헌활동 예산으로 사용됐다. 이는 전년대비 8.4%가 증가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이 직접 참여한 실적은 2008년 45%를 차지했던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2010년에는 총액 7513억3900만 원 중에서 51.1% 인 3842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광 사무국장은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사차원의 봉사조직, 표창제도, 봉사자 등록제도, 휴가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서 기부와 나눔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의 나눔과 기부활동의 외부저해요인으로 사회적 인식부족(26.4%), 반 기업정서 등 외부의 왜곡된 시선 및 보도(24.8%)가 전체의 5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족(22.9%),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압력과 요구(18.4%), 법제도의 문제점(6.6%), 기타(1.0) 등으로 나타났다.

곽 사무국장은 “이러한 조사를 분석해 보면 기업의 나눔과 기부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등록일:2011-12-20/수정일:2011-12-23



선진사회복지회, 나눔 주체 토론회 개최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철희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가 주제발표를 한 후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국장, 곽대석 CJ나눔 사무국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사in저널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희망을 쏘아 올리다

[34호] 2012년 02월 23일 박종선 편집국장 ✉
(목) 21:56:47 kbshdtv@hanmail.net

선진사회복지로 가는 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희망을 쏘아 올리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

인구의 고령화, 다문화, 생산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등 국민의 기대 수준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OECD국가 중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금 ‘복지’는 그야말로 정치권



에서도 핫이슈(Hot Issue)가 되었다. 복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이정숙은 그동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 그가 2010년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직을 맡은 면서 화제가 되고 있어 그를 만나보았다.

복지란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기본

이정숙 회장은 “복지란 ‘행복한 삶’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복지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제도와 지원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하는 일

이 회장은 “선진사회복지 연구회에서는 각 분야 복지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주로 하는 단체로 정책적인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연구회는 고문5, 이사17, 운영위원12명과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선진 국가를 만든다는 모토아래 소외받는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 진입에 필수불가결한 복지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주체나 수혜자의 이해가 얽혀있어 좀처럼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복지서비스 공공기관의 인식은 그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주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복지전달 체계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는 어떠한지, 컨센서스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 답사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같이 느끼면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토론회를 자주 가져 그것을 사회 이슈화를 통해 한번쯤 우리의 복지에 대해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도 참고가 되도록 하기위해 대안도 연구하고, 제시함으로써 해서 보다 나은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토론회 개최는 사회의 이슈로 연결된다

복지에 관한 토론회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의제를 발제하면 복지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토론회의 장점이라면 “사회 각 계층의 사람들과,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사람과, 공무원, 학계와 시민단체들도 참여해서 화두를 던지면 각 분야에서 그것을 받아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정책에 꼭 필요한 대안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낄 때면 토론회를 자주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희는 복지관련 공무원도 초청을 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답변이 나오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그 생생한 현장에서 듣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토론회를 가질 때마다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토론 내용이 시의 적절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그것이 사회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생각에 공감의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또한 토론회의 장점은 각 분야와 학계, 정부, 일반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감했다.

복지정보 공유화의 노력

요즘같이 다각도로 소통을 시도하는 선진사회복지연구회도 토론회에서 발제했던 내용과 복지에 관련된 기관과 유관기관의 토론회를 모으기도 하고, 동영상 등을 통해 일반 회원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특히 회원들에게는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토론주제내용을 알리고, 학교나 단체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자료를 올려서 여러 방면, 다각도에서 복지문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쏟고있다.

변화가 요구되는 복지정책

최근엔 ‘복지’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에 관한 복지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문화 가정이 10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다문화 가정의 2세대도 이제는 어엿한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회장은 “다행히도 임원중 한분이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분이 있어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토론회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복지제도의 편중화로 수혜의 불균형

그는 현재 복지제도의 문제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지만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복지예산의 편중화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봉사를 다니다보면 아동문제, 양육문제, 노인문제, 다문화 문제 등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특히 아동 쪽으로 예산이 많이 쏠려있어 수혜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예산 감독감시 기능이 없다. 이렇게 한곳으로 편파적인 예산이 쏠려있는데 정부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래서 결탁의 비리도 생겨나게 되고, 정작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감독 기능이 없다보니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복지정책의 혜택은 골고루 잘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복지 사건에 대한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을 위한 사회 통합 노력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복지정책 개입을 통한 사회통합 노력은 더욱더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위한 필수조건이다.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복지혜택은 소외계층의 생존능력을 높여주고 빈부의 격차에 대한 박탈감은 완화시켜 국민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이야말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복지정책의 예산의 재원은 우리들의 세금이다. 복지는 내가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혜자이기도 하다.

복지사에 대한 알맞은 처우가 필요하다

국민의 사회적 욕구나 수준이 다양해지고 높아지면서 복지사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복지사 이외 자원봉사 수준은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아직도 복지사에 대한 처우나 대우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복지사들은 전문성도 갖추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나 도덕성이 절실하다. 그뿐만 아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한 봉사와 희생정신이 없으면 복지사들은 건디기 힘든 직업이다. 1인당 평균 관리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해 그들의 처우 개선에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앞으로의 다짐도 이야기 했다.

앞으로의 계획

그는 꾸준히 ‘나눔의 복지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 나눔의 복지토론회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나누는가? 하고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 많이들 참여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어 생각보다 다행이다 싶었다.”며, “그렇다면 복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도입해 세제감면 혜택들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정숙 회장은 끝으로 “사회복지사와 비복지사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선진복지로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선진복지연구회’가 보다 “많은 토론을 거쳐 대안들이 정부의 예산,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꾸준히 선진복지의 나눔 문화를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선진사회복지회가 앞으로도 소외받는 이들을 대변하는 연구회로 우뚝서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박종선 박다운

NEWSis. () 뉴시스아이즈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NEWSisEYES**

'기부문화가 세상을 바꾼다'-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확산 불구 아직 미미

기사등록 일시 [2012-01-09 09:08:44]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역사 저술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제국이 100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서 나왔다고 그의 세계적 베스트 셀러 ‘로마인 이야기’에서 갈파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유럽에서 귀족들이 부와 특권을 향유하는 것만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이다. 귀족계급이 사라진 현대에는 사회 지도층이 자신들이 누리는 것만큼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럽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미국으로 건너가 꽃을 피웠다. 카네기, 록펠러 등 대부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비영리 자선사업 재단은 오늘날 미국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행과 공헌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은 기아문제 해결은 물론 학문과 문화발전, 신흥국 원조에까지 활동영역이 광대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멜린다는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저개발국가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와 함께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공익재단에 기부하자는 운동인 ‘기빙 플레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엔 블룸버그통신을 만든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의 부자 기업인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핏은 개인재산 58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버핏은 “부자들의 돈은 사회에 돌려줘야 할 보관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자들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더 많은 혜택과 과다한 몫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회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에는 5만6000여 개의 자선재단이 있으며, 미국인들의 98%가 기부에 참여한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부문화가 폭넓게 뿌리를 내려 생활화하고 있다. 총 기부액의 77%가 소액기부금이다.

매년 연말이면 구세군 자선냄비와 종소리는 거리의 연말풍경을 연출한다. 경기가 침체해 먹고 사는 문제가 팽팽해진 올해에도 자선냄비를 통한 얼굴 없는 천사들의 기부가 마스크를 장식했다. 지난달 4일에는 거리의 모금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1억1000만원짜리 수표가 나와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소개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90대 노부부가 1억원짜리 수표 2장을 구세군본부 본영을 찾아와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했다.

전주 노송동에서는 2000년 이후 12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와 5024만2100원을 맡기고 사라졌다.

이러한 익명의 기부자들로 인해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눔으로 서로 감싸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세청의 세액공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2008년 기준 총 기부금액은 8조9100억원으로 2001년 4조67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연말소득 공제 자료를 통해 파악한 1999년 기부금 총액이 2조9000억원이었으므로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GDP 대비 총 기부금액의 규모는 0.8% 정도로 미국의 2.2%에 비해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창립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토론회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 하는가?’에서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철희 교수가 밝힌 내용이다.

강 교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총액은 0.54%로 미국의 1.67%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나 영국 0.73%, 호주 0.65%에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비율은 60대40이다. 미국이 95대5로 개인 기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종교별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으로 기부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이 높았다.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사용 희망 분야를 ‘자선 및 사회복지 분야’ ‘지역사회 발전’ ‘의료분야’ ‘해외구호활동’ ‘교육및 연구활동’ 순으로 꼽았다.

강 교수는 2009년에 실시한 ‘부유층의 기부 관련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이 조사는 유동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부유층 68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수치를 얻어냈다. 이 가운데는 자산 50억원~1000억원대를 보유한 부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유층들은 기부의 의미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복수 답변 허용)이 63.6%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가치 및 자아 실현’(50%),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 수단’(39.4%) 순으로 답변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기부를 경험한 이들은 전체의 95.5%로 대부분 기부를 해본 사람이 참여했다. 가장 보편적인 기부처는 자선단체 및 사회복지기관(88.9%), 교육기관(33.3%), 이웃(28.6%), 정치단체(23.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3년 동안 평균 1억1500만원 정도를 기부했으며, 향후 기부를 계속할 의사가 있고,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도 약 10%였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부행위 의미를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개인의 가치 및 자아실현’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 수단’ 순으로 생각하고 답했다. 부자들의 기부행위가 일상화하고, 동기 자체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기부금액이 국가 전체의 기부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이 75%, 재단이 13%,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7%를 차지해 개인의 비중이 거의 대다수이다. 개인 기부 중에서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기부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35%(상위 1% 부유층)~50%(상위 1~5% 부유층)나 된다. 부자들의 기부금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1~5%의 정확한 자선기금 출연 통계는 없으나, 관계자들은 “아마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자가 적고, 기부금액도 선진국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돈 많은 거액 기부자는 이건희 정몽구 이종환(삼영기업 회장) 이명박 안철수 등 몇 사람 되지 않으며, 대부분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사재 8000억원을 사회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 기금 4500억원, 이 회장의 막내 딸 윤형씨가 남긴 재산 3500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진전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사회공헌연구실’을 만들어 실현방안을 찾고 있는중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006년 비자금 사건에서 특별사면되면서 7년 동안 사재 84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순수 개인기부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을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기탁했다. 저소득층 자녀 8만 명에게 사회적 계층 이동을 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데 사용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정몽준 의원도 지난해 8월 범현대가 오너들과 함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재 2000억원

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불거지자 재산의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취임 2년차인 2009년 8월에 331억원을 출연해 자신의 호를 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해 10월15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당시는 1500억원 상당, 현재는 2500억 원대)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재벌가와 대선주자급 지도층의 기부행위는 우리사회에 기부문화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빈민을 구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소액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기부참여율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의 제고, 사회통합이라는 목표가 실현된다”고 말한다.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기부문화는 상류층, 사회지도층의 거액 출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도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낸 소액 기부금액이 모여 수 조원의 큰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부참여율이 높아야 함에도 2007년 68.6%였던 개인 기부 참여율이 2009년엔 5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민 2명 중 1명이 기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70~80%대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개인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기부가 확산돼야 따뜻한 사회, 함께 사는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leeds@newsis.com

※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60호(1월16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칼럼] '소통' 잘 해야 한다!

[2012/03/02 14:47:00]

이 정 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화가 정체되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울화통이 터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장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고착되어 가고 있는 소득 양극화 등으로 불안과 불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자기들의 이야기, ‘아픔을 제발 들어 달라’고 했지만 별로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2040’들의 울화통이 터지고 난 뒤에야 여야 할 것 없이 소통을 위해 나섰다.

선거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이들과의 소통을 빠저리게 느낀 정치권은 그들과 소통을 위해

SNS도 활용하고 북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 소통을 하겠다고 난리들이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무슨 목적이든 소통을 하고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소통이 무엇일까? 소통이 왜 필요할까?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할까? 소통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을 해 보게 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소통을 위해 SNS 역량지수를 만들고 당장 4월 총선에 ‘SNS 활용 능력’을 공천에 반영한다고 한다. 예비후보들은 부랴부랴 뒤 늦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팔로우와 친구를 늘리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한편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장을 가보고 현장의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에 소통을 한답시고 스마트폰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댓글을 다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모습들이 달갑지만은 않다.

소통을 위해 정치인, 정치 지망생들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하나 같이 듣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말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 어디에 갔고 무슨 행사에 참석했고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 등 신변잡기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것이 주류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소통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 주는 것’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한 드라마 대사가 생각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손을 오그라들게 한 이 말 한마디에 시청률이 경천 휘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작년 한해 베스트셀러 종합 1위 책이다.

이 둘은 SNS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너의 아픔에 내가 어떤 눈높이와 자세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가 아닌 ‘너’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진지하게 듣고 공감하고 있다. 비록 아픔을 직접 대신해 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진정성이 서로에게 통한 것이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라고 본다.

말, 즉 소통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된 정치인, 정치권은 국민들, 유권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개그의 소재가 되어 조소거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통부재는 비단 정치인,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기득권층은 그렇지 못한 계층에게 더욱 귀 기울려 많이 듣는다면 절로 가슴이 열려 말(言)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행동이 통해 자연히 배려와 양보로 소통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3소’를 잘해야 한다고 한다. ‘옳소’, ‘그렇소’, ‘맞소’ 이는 상대를 인정해 주고 상생을 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선거철이다 보니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그들이다.

그래서 다들 소통하겠다,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난리들이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부디 유권자 눈높이에서 듣고자 했던 초심의 자세를 잃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611-020289-871(외환) 예금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 저희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